

◆ 11 수능 17~20번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거센 바람이 불고 화재가 잇따르자 정(鄭)나라의 재상 자산(子産)에게 측근 인사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라고 요청했지만 자산은 “천도(天道)는 멀고 인도(人道)는 가깝다.”라며 거절했다. 그가 보기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하늘의 뜻이 아니었고, 자연 변화 또한 인간의 ㉠ 화복(禍福)과는 거리가 멀었다. 인간이 자연 변화를 파악하면 얼마든지 재난을 대비할 수 있고 인간사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그는 인간의 문제 해결 범위를 확대했고 정나라의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가 살았던 정나라는 요충지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춘추 초기부터 제후국의 쟁탈 대상이었고, 실제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하였다. 춘추 중기에는 귀족 간의 정치 투쟁이 벌어져 자산이 ㉡ 집정(執政)하기 직전까지도 정변이 이어졌다. 따라서 귀족 정치의 위기를 수습하고 부국강병을 통해 강대한 제후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정나라와 자산에게 부여된 과제였다. 그래서 그는 집권과 동시에 귀족에게 집중됐던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는 귀족이 독점하던 토지를 백성들도 소유할 수 있게 하였고 이것을 문서화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백성들은 ㉢ 개간(開墾)을 통해 경작지를 늘려 생산을 증대하였고, 국가는 경작지를 계량하고 등록함으로써 민부(民富)를 국부(國富)로 연결시켰다. 아울러 그는 중간 계급도 정치 득실을 논할 수 있도록 하여 귀족들의 정치 기반을 약화시키는 한편,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법을 성문화하여 정(鼎)*에 새김으로써 모든 백성이 법을 알고 법에 따라 처신하게 하는 법치의 체계를 세웠다. 성문법 도입은 귀족의 임의적인 법 제정과 집행을 막아 그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조치였으므로 당시 귀족들은 이 개혁 조치에 반발하였다.

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한 자산의 개혁 조치에 따라 정나라는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그리고 법을 알려면 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문법 도입은 백성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그의 개혁 조치는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백성의 ㉣ 위상(位相)을 높였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힘에만 의존하여 다스리는 역치(力治)의 가능성이 ㉤ 농후(濃厚)하였고, 결국 국가의 엄한 형벌과 과중한 세금 수취로 이어지는 폐단을 낳기도 했다.

* 정: 발이 셋이고 귀가 둘 달린 술.

17. 위 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자산이 추진한 개혁의 사상적 기초
- ② 자산이 추진한 개혁의 시대적 배경
- ③ 자산이 단행한 개혁 조치의 내용
- ④ 자산이 단행한 개혁 조치의 영향
- ⑤ 자산이 단행한 개혁에 대한 계승

18. 위 글에서 자산의 개혁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백성: 이전보다 일관성 있는 법 적용을 받겠군.
- ② 백성: 법을 알기 위해 우리도 글을 배워야겠군
- ③ 백성: 주인 없는 땅을 개간하면 내 재산이 될 수 있겠군.
- ④ 귀족: 백성도 토지를 소유하니 우리 입지가 약화되겠군
- ⑤ 귀족: 중간 계급의 정치력 강화에 맞서 법치 전통을 세워야겠군.

19. <보기>의 입장에서 위 글의 자산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노자(老子)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는 자연스럽고 무의지적이지만, 스스로의 작용에 의해 극대화된다고 보았다. 인간도 이러한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보아 통치자의 무위(無爲)를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의 도덕, 법률, 제도 등은 모두 인간의 삶을 인위적으로 규정하는 허위라 파악하고, 그것의 해체를 주장하였다.

- ①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시도는 결국 현실 사회를 허위로 가득 차게 할 것이다.
- ② 자연이 인간의 화복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자연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 ③ 현실주의적 개혁은 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안정과 혜택을 줄 것이다.
- ④ 사회 제도에 의거하는 정치 개혁은 사회 발전을 극대화할 것이다.
- ⑤ 사회 규범의 법제화는 자발적인 도덕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20.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재앙과 복을 아우르는 말.
- ② ㉡: 군주가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에 군주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림.
- ③ ㉢: 거친 땅이나 버려진 땅을 일구어 논밭이나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듦.
- ④ ㉣: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 ⑤ ㉤: 어떤 경향이나 기색 따위가 뚜렷함.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정부의 관직을 ㉔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 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시험 과정에서 ㉕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 준다.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 냈다.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제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천 년이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 준다.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다.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군의 유럽 계몽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

(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인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다. 고염무는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㉖ 지방관인 지현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 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 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중희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소'와 같은 옛 제도를 ㉗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㉘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라는 압력이 있었다.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다.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㉙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또한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의 ㉚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다.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었다.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에, 지역 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의 부정적 결과로 인식되었다.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천거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던 것이다.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외의 정치 체제를 상상하기 ㉛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은 단순히 복고적인 것이 아니었다.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16. (가)와 (나)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㉑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㉒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 ㉓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사상가들의 견해를 언급하며 특정 제도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㉔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을 비교하면서 특정 제도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 ㉕ (가)는 특정 제도의 발전을 통시적으로, (나)는 특정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공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17.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시되었다.
- ② 과거제는 폭넓은 지식인 집단을 형성하여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에 기여했다.
- ③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④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를 주었다.
- ⑤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여긴 계몽사상가들이 있었다.

18. (나)를 참고할 때, ㉠과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근무지를 자주 바꾸게 되어 근무지에 대한 소속감이 약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②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의 봉급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 공공성과 상충되는 세태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③ 과거제로 선발한 관료들은 세습 엘리트에 비해 개인적 동기가 강해서 공동체 의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④ 과거제를 통해 배출된 관료들이 출세 지향적이어서 장기적 안목보다는 근시안적인 결과에 치중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⑤ 과거제가 낳은 능력주의적 태도로 인해 관리들이 승진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만을 내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9. (가)와 (나)를 참고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했지만, ㉡은 결과주의의 지나친 확산에서 비롯되었다.
- ② ㉠은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보장했지만, ㉡은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 ③ ㉠은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지만, ㉡은 지나친 경쟁이 유발한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었다.
- ④ ㉠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은 관리 선발 시 뒤떨어진 검증의 곤란함에서 비롯되었다.
- ⑤ ㉠은 관료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을 확대했지만, ㉡은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 확보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

20. <보기>는 과거제에 대한 조선 시대 선비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갑**: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이라 차별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과거를 통해 관직을 얻으면서 불만이 많이 해소되어 사회적 갈등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다.
- **을**: 과거제를 통해 조선 사회에 유교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아 좋다. 그런데 많은 선비들이 오랜 시간 과거를 준비하느라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다.
- **병**: 요즘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나오는 책들을 보면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만 정리되어 있어서 학습의 깊이가 없으니 문제이다. 그래도 과거제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① ‘갑’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능력주의에 따른 공정성과 개방성이라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것이겠군.
- ② ‘을’이 과거제로 인해 많은 선비들이 재능을 낭비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것이겠군.
- ③ ‘을’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고전과 유교 경전 위주의 시험 내용에 주목한 것이겠군.
- ④ ‘병’이 과거제로 인해 심화된 공부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형식적인 학습을 유발한 시험 방식에 주목한 것이겠군.
- ⑤ ‘병’이 과거제로 인해 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에 주목한 것이겠군.

21.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그가 열쇠를 방 안에 두고 문을 잠가 버렸다.
- ② ㉡: 우리는 그 당시의 행복했던 기억을 되살렸다.
- ③ ㉢: 협곡 사이에 구름다리가 멋지게 걸쳐 있었다.
- ④ ㉠: 사소한 일에만 매달리면 중요한 것을 놓친다.
- ⑤ ㉢: 형편이 어려울수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 26 LEET 언어이해 10~12번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18년 6월 중종은 “내가 정사를 돌보면서부터 태평한 통치를 바라여 널리 인재를 구한 지 열 해 남짓이나 효과 없이 한탄만 할 뿐이니, 많은 현능한 이들이 추천되어 어진 교화를 도울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의논하라.” 하고 명하였다. 조선은 시험으로 재목을 선발하여 관리로 등용하는 과거제도를 고려로부터 이어 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유학적 소양을 선발 기준으로 하는 과거는 성리학을 표방한 국가에 매우 적합한 제도였다. 학업을 바탕으로 한 등용 방식은 학문 발전과 사회 교육에도 이바지하였다. 하지만 시험만을 위한 경전 암기와 모범 답안 위주의 학습이 진정한 학문은 아니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런 공부로는 또 다른 소양이라 할 품행과 덕성을 키우지 못한다고도 하였다. 중종의 하교는 이러한 인식과도 맥이 닿아 있다.

조광조가 주도하는 사림 세력은 기존의 과거가 글재주만 시험할 뿐 관료로서의 재능이나 인품, 행실 등은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진정한 교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완으로서 과거제도에 천거제인 현량과를 도입하기를 청하였다. 덧붙여 현행 제도는 권세가의 자녀가 합격하기에 유리하여 초야에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하였다. 과거제도는 실력 위주의 인재 등용 방식이었고, 노비가 아니라면 백성은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는, 형식적으로는 평등하고 공정한 시험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거 응시를 위한 학업에 경제적 뒷받침은 필수적이었다. 또한, 과거의 최종 합격은 벼슬할 자격만 주어지는 것이어서, 급제한 뒤에 실직을 받아 관료로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의 후원과 인맥이 필요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시험은 지배계층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능도 갖게 된 것이다.

과거는 매우 힘든 시험이기도 했다. 그 꽃이라 할 수 있는 문과는 경전의 암기와 해석뿐 아니라 작문과 논술의 능력까지 평가한다는 점에서 어렵지만, 시험 과정도 굵이굵이 고갯길이다. 우선 경전 이해 중심의 생원시와 글 짓는 능력을 보는 진사시도 초시와 복시를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생원이나 진사라야 문과에 응시할 수 있다. 문과에서도 경전, 작문, 논술로 초시 3단계, 복시 3단계를 거쳐 최종 33명이 뽑힌다. 이들이 다시 치르는 진사는 품계를 내리기 위해 등수를 정하는 논술 필기고사로서 임금이 주관한다. 성적에 따라 정7품, 정8품, 정9품을 받고, 장원은 종6품이다. 이렇게 열리는 출세의 길 때문에, 소수의 정원만 뽑히는 험난한 시험에 지원자가 구름처럼 몰려 경쟁이 치열했다. 등급 때문에 다시 과거를 보기도 했다. 그런데 현량과는 덕망과 행실로 각처에서 천거된 이들로 한 번의 논술 시험을 치러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인 것이다. 게다가 급제자들에게는 일반 과거보다도 높은 품계를 주려 하였다.

이런 천거제에 대하여 훈구 세력의 반발은 컸다. 시험 없이 쉽게 관리가 되는 것은 공정성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추천으로 선발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한 특혜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1519년 현량과가 시행되었다. 천거된 이들을 선별하여 근정전에서 논술로 시험하였고, 12명의 관직 보유자가 포함된 28명의 문과 합격자가 나왔다. 다수가 서울 지역 거주자였다. 장원은 조광조와 친분이 두터운 김식이었고, 사림파의 후원자로 알려진 안당은 세 아들이 모두 합격하였다. 자파 세력 키우기라는 정적들의 비난은 피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훈구과를

건제하는 데 사람을 이용하려 했던 중종도 지나친 당파 형성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현량과는 결국 기묘사화의 주요한 계기와 명분으로도 작용하였고, 사화 직후 현량과의 문과 합격은 취소되었다. 이후 현량과는 다시 시행되지 않았으며 과거제도 자체는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다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다.

10. 율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량과는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여 통치를 돕는다는 과거제의 목적을 표방하였다.
- ② 어렵게 성사된 현량과의 실시로 초야에 묻힌 지방 선비들이 대거 품계를 받아 관직에 진출하게 되었다.
- ③ 생원과 진사는 관직을 받을 자격만 주어지는 것이어서 실제로 벼슬을 하려면 문과의 초시와 복시를 거쳐야 했다.
- ④ 과거는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시험이 아니라 암기 위주의 평가로 되어 있어 덕성을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⑤ 조선에 사는 이라면 누구든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일반인이 합격하여 고위관료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았다.

11. 율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관료가 다시 과거에 응시하여 더 높은 품계를 받을 수 있었다.
- ② 양반 지배층은 정보와 인맥, 재력을 활용하여 과거를 통한 출세 기회를 높일 수 있었다.
- ③ 현량과의 시험은 품계를 받을 충원을 정했다는 점에서 전시를 치른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 ④ 추천제 관료 선발의 도입은 사람 세력을 일거에 등용하려 한 의도였다고 비판을 받았다.
- ⑤ 훈구파는 관리 등용이 편파적일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실력 위주의 과거제를 옹호하였다.

12. 율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중 종: 선왕의 등용 제도는 항구적이나 별도로 시험하는 법도 있는 것이니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추천에서는 명과 실이 어긋날 염려가 있음을 명심하라.

조광조: 재주만으로 선발하면 그 행실을 알 수 없는 폐단이 있으므로, 덕행까지 감안하여 뽑는 천거제가 이상적입니다.

정광필: 재주와 행실을 모두 갖추지 못하는 문제가 천거에서는 생기지 않겠습니까? 선왕대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법제를 경솔히 고칠 수는 없습니다.

남 곤: 현행 과거는 이미 현량과를 시행한 한나라에서의 실패를 거친 끝에 정착한 제도입니다. 잘못된 천거라 하여 천거자를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

김 정: 사소한 폐단에 얽매어 나아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교화는 언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조광조: 재주 있는 이도 여전히 뽑힐 수 있으므로 천거제 시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① 중종은 추천제 방식의 도입을 지시하면서도 천거로 말미암을 폐단에 대한 인식과 경계를 드러낸다.
- ② 조광조는 정광필, 남곤, 김정 of 반대에도 현량과의 도입을 관철하고자 고군분투한다.
- ③ 정광필은 관리 선발의 시험제도를 천거제로 대체하려는 조광조의 주장에 대해 어느 것이나 폐단이 있기는 매한가지라는 입장이다.
- ④ 남곤은 현량과 시행에는 찬성하지만 역사적 경험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 ⑤ 김정은 경전의 학습에만 치우치는 폐단에 크게 구애받지 말라고 주문한다.

◆ 11 MDEET 언어추론 8~10번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시대의 조의(朝儀)는 군신(君臣)이 만나는 유교적 의식을 총칭했다. 조의의 참석자는 예를 받는 국왕과 예를 행하는 행례자(行禮者)로 구분되는데, 행례자는 조선의 관품 체제에 편성된 사람이었다. 조의에서 국왕의 자리는 근정전 내부에 남향으로 준비됐고, 행례자 자리는 마당에 북향으로 설치됐다. 가운데 길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하는 문관을 동반, 서쪽에 위치하는 무관을 서반이라 했다. 동·서반에는 각각 관품별로 별도의 반열(班列)이 있었는데, 높은 관품의 반열이 앞줄이었고, 낮은 관품은 뒷줄이었다. 같은 반열 내에서의 서열은 동·서반 모두 가운데 길에 가까울수록 높았다. 동쪽은 양(陽)을 의미하므로 우위에 있는 동반을 배치한 것이고, 반열 및 반열 내에서의 서열은 국왕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런 배치는 유교의 일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조선 시대 내내 고정된 것이었다.

또한 조선은 조의 절차를 조정하여 국왕을 유교적 군주로 부각시키고자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상적 형식과 현실적 편의성 사이의 적절한 절충점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천명(天命)을 받은 유교적 군주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북극성과 같은 존재여야 했다. 조의에서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국왕은 움직이지 않고, 관원이 국왕을 찾아가서 뵈고 나오는 형식을 갖춰야 했다. 태조 때는 전체 관원이 입장하여 예를 행하고 퇴장하는 과정까지 국왕이 지켜보는 형태였다. 이는 유교적 군주상을 잘 반영한 형식이었으나, 고려 이래의 관행인 승려의 법좌(梵唄) 연주와 아라비아 사람의 축송 순서가 있는 등 비유교적인 절차도 포함하고 있었다. 태종 때는 관원이 모두 입장한 상태에서 국왕이 입장하고, 행례 절차가 끝난 후에는 국왕이 먼저 퇴장했는데, 이는 국왕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것이었다.

세종 13년 정월 초하루에 진행된 ㉠ 정삭조하의(正朔朝賀儀)부터 조의는 조선적인 면모를 갖추게 됐다. 관원이 나뉘어 입장했던 당(唐)의 의식을 참조하여, 유교적 군주상을 드러내면서 번거로운 절차를 줄였다. 종전과는 달리 3품 이하 관원이 미리 입장하고, 이어 국왕이 어좌에 앉고, 마지막으로 2품 이상의 관원이 입장한 후, 전체 관원이 함께 행례했다. 국왕은 2품 이상 관원의 퇴장을 지켜봤고, 이들의 퇴장과 동시에 행례의 종료를 의미하는 예필(禮畢)이 선언됐다. 이것은 2품 이상의 입·퇴장으로 전체 관원의 입·퇴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려는 의도였다. 이런 구성은 2품 이상의 관원에게 전체 관원을 대표하는 행례 역할을 담당하게 한 것으로, 여타 관원과 구분되는 2품 이상 재상급 관원의 특별한 지위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왕세자의 행례 절차도 이때 함께 정비했다. 왕세자가 일반 관원을 이끌고 행례할지는 논란이었다. 3품 이하 관원이 있는 상태에서 왕세자가 자신의 관속을 이끌고 입장하여 행례하고 퇴장한 후, 2품 이상의 관원이 입장하여 전체 관원이 행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한 승려나 아라비아계가 담당했던 비유교적 요소도 배제했고, 일본인과 여진인 자리도 고정시켰다. 일본인은 동쪽, 여진인은 서쪽으로 했는데, 각각 조선에서 인정한 관품에 따라 해당되는 문무 관원의 반열 안에 가장 서열이 낮은 자리가 배정됐다. 동북 아시아를 포괄하는 조선적 질서를 규정한 것이다.

수정된 틀 위에서 다양한 절차가 구성됐다. 단순한 의식에서는 네 번 절하는 사배(四拜)만 있었지만, 정삭조하의에서는 여러 절차

가 추가됐다. 의례 공간에는 국왕을 나타내는 다양한 의장물이 배치됐고, 국왕의 임재(臨在)는 제후를 상징하는 홍·청색 의장으로 표시됐다. 사배에 이어, 축하 인사와 이마를 땅에 대는 고두(叩頭), 천세(千歲)를 외치는 산호(山呼) 등이 행해졌다.

세종 13년의 의식은 『세종실록』의 ‘오례’ 조의에서 부분적으로 수정됐다. 이 조의에서는 예필이 선언된 후, 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왕이 먼저 퇴장했다. 이러한 방식은 황제권이 극대화된 명(明)의 제도를 수용한 것으로, 국왕의 편의가 더 고려된 형태로 조정된 것이었다. 이런 수정을 거친 후, 세종 13년의 의식은 성종 때 간행된 『국조오례의』에서 정형화된 의식으로 자리 잡고, 이후 그대로 시행됐다.

8. 입·퇴장 절차를 기준으로 조의의 특성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태조 때 조의는 『국조오례의』 조의보다 국왕의 편의성이 더 고려됐다.
- ② 태종 때 조의는 『세종실록』 ‘오례’ 조의보다 유교적 군주상이 더 고려됐다.
- ③ 세종 13년 정삭조하의는 태종 때 조의보다 국왕의 편의성이 더 고려됐다.
- ④ 『세종실록』 ‘오례’ 조의는 『국조오례의』 조의보다 유교적 군주상이 더 고려됐다.
- ⑤ 『국조오례의』 조의는 세종 13년 정삭조하의보다 국왕의 편의성이 더 고려됐다.

9.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왕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시각적 요소를 이용했다.
- ② 국왕의 행사장 퇴장 여부를 기준으로 예필의 시점을 정했다.
- ③ 동·서반 반열 중 가운데 길에 인접한 자리에 외국인을 배정했다.
- ④ 중국 의례 형식과 비유교적 의례 전통을 종합하여 의식을 구성했다.
- ⑤ 왕세자가 전체 관원을 대표하여 행례함으로써 특별한 지위를 드러냈다.

10. 위 글에서 <보기>의 ㉠의 예를 찾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유교적 통치는 상징을 반영한 의례의 구성을 통해 드러났고, 의례는 상호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참석자를 현존하는 질서 내로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의례의 현장은 특정 질서 체제 내에서의 우열 관계를 반영하여 ㉠ 사회적 차등화를 하나의 공간에 담아내는 기능을 했다.

- ① 국왕 자리의 북쪽 배치
- ② 음양에 따른 반열 배정
- ③ 관품에 따른 행례 구분
- ④ 법패 연주 절차의 수용
- ⑤ 사배·고두·산호 시행

◆ 13 LEET 언어이해 22~24번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조선 전국 무렵 태조는 전국을 330여 개의 군현으로 편제하고 중앙에서 직접 수령을 파견하면서 그 직급을 6품 참서관으로 높여 자질과 권위를 확보하려 하였다. 이는 근무 연한을 채우면 7~9품의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던 서울의 이전(吏典)들이 지방수령으로 진출하는 것을 봉쇄하는 조치였다. 이에 따라 부족한 수령 자원은 6품 이상의 관원에게 천거하게 하였고 관찰사에게는 지방관 평가뿐 아니라 지방 사족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임자 발탁 권한을 주었다. 이렇게 하여 30개월 임기로 공명(公明), 엄근(廉謹) 등 덕행 항목에 우선권을 두어 평가하는 지방수령 평가·임용 제도가 시행되었다.

태종이 즉위한 이후 수령의 업무가 표준화되었다. 이때 수령 7사가 제정되어 인구 증가와 농업 생산성 향상, 공정한 조세 부과, 학교 발전, 아전 농간 차단 등의 업무가 규정되었다. 일 년에 두 번 정기 평가가 실시되었고, 5회의 평가에서 2회 '중' 평가를 받으면 파면되는 원칙도 마련되었다. 수령의 업무는 수치화된 결과와 실적만으로 평가되었고, 이후 이러한 원칙은 『경국대전』에 명문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한편 수령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덕행에 의한 평가와 관찰사에 의한 현지 발탁은 폐지되었다. 그 대신 근무 기간을 채운 서울의 이전 중 10%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여 잡직에 임명될 수 있게 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면 중6품의 수령직 대기자

가 되도록 하였다. 이전 출신의 수령 진출을 통제하는 장치였지만, 한편으로 행정 능력을 갖춘 이전 출신자에게 수령 진출 기회를 부여한 것이었다.

세종에 이르러서는 수령의 지방 실정 파악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수령의 잦은 교체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에 따라 수령의 임기가 60개월로 늘었으며 현지민의 수령 고소도 금지되었다. 임기 전 사임한 수령이 남은 임기 동안 다른 관직에 서용될 수 없게 하는 조치도 시행되었다. 자질 있는 수령의 확보를 위해 수령직 대기자인 이전 및 잡직자를 대상으로 수령취재법이 시행되어 사서와 삼경, 법전을 시험 보게 하였다. 또한 무관이 배정되었던 약 80여 곳의 수령 자리 중 국방상 중요한 50여 곳을 제외한 지역에는 행정 능력과 인품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평가 방식도 보완되었는데, 10회로 늘어난 평가 중 3~5회 '상'을 받으면 등급을 올려 주고, 5회 '중'을 받더라도 관품을 유지하게 하였으며, 연속으로 '중'을 받은 경우라도 10회의 평가를 받게 하여 임기를 채우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평가 방식을 포상 위주로 변경하여 수령의 업무 의욕을 고취하고 부정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방수령의 장기 근무로 인하여 지방수령의 자질 저하와 경·외관(京外官)의 분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는 조정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공신 및 대신의 자제를 수령으로 파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령직이 과거를 통해 문반직에 진출하지 못한 세력이 자제의 관직 진출로 활용되면서 수령직의 열등화는 오히려 더욱 분명해졌다. ㉠ 문과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수령으로 파견하는 조치가 단행된 것은 경·외관의 분화를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이었다. 분화 현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수한 자원을 일정 기간 외직으로 파견함으로써 중요 거점이라도 유능한 수령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이들은 수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대간을 역임하기도 하였기에 주변의 수령들에 대한 비리 예방 효과가 있었다. 재판과 같은 전문적 업무나 대규모 토목 공사 등이 발생할 때, 이들은 관찰사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 되었다.

지방수령의 장기 근무는 심각한 적체 현상을 낳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세조는 이전의 제도를 계승하면서도 수령의 임기는 30개월로 단축하였다. 그와 함께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령을 파격적으로 승진시키는 한편, 불법 행위를 한 수령은 즉각 징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일시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어도 안정적인 관직 운영 방식으로 정착되지 못했다.

성종 때 『경국대전』이 편찬되면서 관련 사항들이 명확히 정비되었다. 수령 7사가 규정으로 자리 잡고, 근무 기간도 60개월로 환원되었다. 평가에서 10회 '상'이면 품계를 올려 주고, 3회 '중'이면 파직, 2회 '중'은 녹봉이 없는 관직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4품의 관직에 승진하려면 외관직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서울과 지방 관원의 교류 원칙도 분명히 하였다. 이들 규정은 지방 세력가를 억제하면서 백성을 안집(安集)시키고 중앙의 덕화(德化)를 관철하고자 한 오랜 노력의 산물이었다.

22. 수령에 대한 각 시기별 평가 방식을 정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태조: 지역 출신 수령을 대상으로 한 실적 위주의 평가
- ② 태종: 현지 파견 관리에 의한 덕성과 전문성 평가
- ③ 세종: 지방 수령들 간의 수치화된 기준에 따른 상호 평가
- ④ 세조: 관례와 연공서열에 따른 연도별 평가
- ⑤ 성종: 표준화된 고과 시행에 근거한 정기 평가

2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기 연장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었다.
- ② 중요 거점의 효율적 통치를 의도하였다.
- ③ 관찰사가 책임지는 주요 업무에 유용하였다.
- ④ 인근 수령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유도하였다.
- ⑤ 서울과 지방 관원의 차별화 현상을 해소하였다.

24.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방관 제도의 변화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방 수령의 출신 배경별 구성이 다양화되었다.
- ② 중앙 이전의 지방관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 ③ 고위직 자체의 수령 진출로 수령직의 위상이 높아졌다.
- ④ 중앙과 지방의 관리에 대한 인사 제도가 이원화되었다.
- ⑤ 문·무 관원의 지방관 임명 비율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봉당(朋黨)은 싸움에서 생기고, 그 싸움은 이해(利害)에서 생긴다. 이해가 절실할수록 당파는 심해지고, 이해가 오렐수록 당파는 굳어진다. 이것은 형세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밝힐 수 있을까?

(나) 이제 열 사람이 모두 굶주리다가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게 되었다고 하자. 그릇을 채 비우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난다. 말이 불손하다고 꾸짖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싸움이 말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는다. 다른 날에 또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다 그릇을 채 비우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난다. 태도가 공손치 못하다고 꾸짖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싸움이 태도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는다. 다른 날에 또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행동이 거칠다고 힐난하다가, 마침내 어떤 사람이 울화통을 터뜨리고 여럿이 이에 시끌벅적하게 가세한다. 시작은 대수롭지 않으나 마지막에는 크게 된다.

(다) 이것을 또 길에서 살펴보면 이리하다. 오던 자가 어깨를 건드리면 가던 자가 싸움을 건다. 말이 불손하고, 태도가 사나우며, 행동이 거칠다하여 그 하는 말은 끝이 없으나 떳떳하게 성내는 것이 아닌 것은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다 싸울 때와 똑같다.

(라) 이로써 보면 싸움이 밥 때문이지, 말이나 태도나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해의 연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는, 그 잘못됨을 장차 고칠 수가 없는 법이다. 가령, 오늘은 한 사발의 밥을 먹다 싸웠으되 내일에는 각기 밥상을 차지하고 배불리 먹게하여 싸우게 되었던 원인을 없앤다면, 한 때 험뜯고 꾸짖던 앙금이 저절로 가라앉아 다시는 싸우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마) 나라의 봉당도 이와 다를 게 무엇인가, 처음에는 한 사람의 선하고 악한 것, 또는 한 가지 일의 경중(輕重)에 대해서 마음으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입으로 비방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얼마나 하찮은 일인가. 그러나 조정에서는 서로 피 튀기며 싸우고, 조정 밖에서는 으르렁거리는 것이 마치 군령(軍令)도 없이 사람마다 싸움터에서 후퇴할 줄 모르는 것과 같이 하니 도대체 왜 그러한가?

3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사람의 심성은 본디 착하다.
- ② 모든 싸움은 태도에서 발단된다.
- ③ 봉당은 언어의 혼란에서 비롯된다.
- ④ 갈등의 근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 ⑤ 개인의 싸움과 집단의 갈등은 다르다.

39. (가)~(마) 중, 봉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가 제시되어 있는 것은?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40. 윗글의 구조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가) (나) (다) (라)
(나) (마)
- ② (가) (라) (마)
(다)
- ③ (가) (나) (라)
(마)
- ④ (가) (나) (라)
(다) (마)
- ⑤ (가) (다) (라) (마)
(나)

41.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마)에 제기된 물음에 적절하게 대답한 것은?

- ① 사람들이 예의를 모르기 때문이다.
- ② 작은 문제를 크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 ③ 갈등을 조정할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
- ④ 관직에 비해 사람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 ⑤ 선악의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39~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백성을 위하여 목(牧)*이 존재하는가, 백성이 목을 위해 태어났는가? 백성들은 곡식과 피륙을 내어 목을 섬기고, 수
(가) 레와 말을 내어 파르면서 목을 영송(迎送)하며, 고혈(膏血)을 다하여 목을 살찌게 하니 백성들이 목을 위해서 태어난 것인가?

태고 시절에는 백성만이 있었을 뿐이니 어찌 목이 존재했는가? 백성들은 한가로이 마을을 이루어 모여 살았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판결할 수 없었다. 이 때 한 노인이 있어 공평한 말을 잘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노인에게 가서 판정을 받았고, 모든 이웃 사람들도 판정에 복종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노인을 추대하여 이정(里正)이라고 불렀다. 또한 여러 마을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판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느 한 노인이 있어 현명하고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모두 그에게 가서 판정을 받고 복종하였다. 그리하여 함께 그를 추대하여 당정(黨正)이라고 불렀다. 역시 몇 개의 당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어질고 덕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그에게 가서 판정을 받고 복종하였다. 그리하여 그를 추대하여 주장이라고 불렀다. 이와 마찬가지로 몇 개 주의 주장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우두머리로 삼아 국군(國君)이라 하고, 여러 국군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우두머리로 삼아 방백(方伯)이라 하며, 사방의 방백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가장 높은 우두머리로 삼아 황왕(皇王)이라 불렀다. 그러므로 황왕의 근본은 이정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이정은 백성들의 희망을 좇아 법을 제정하여 당정에게 올리고, 당정은 백성들의 여망을 좇아 법을 제정하여 주장에게 올렸다. 역시 주장은 이를 국군에게 올렸으며, 국군은 다시 황왕에게 올렸다. 그러므로 그 법은 모두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세에는 어느 한 사람이 스스로 황제가 되어 자기의 자제와 종복들을 제후로 삼고, 제후는 자기 심복을 뽑아 주장을 삼으며, 주장 역시 자기 심복을 가려 당정·이정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황제는 자기 욕망을 좇아 법을 제정하여 제후에게 내리고, 제후는 다시 자신의 욕망대로 법을 제정하여 주장에게 내린다. 이와 같이 주장은 당정에게, 당정은 다시 이정에게 내리니, 그 법은 통치자를 존숭(尊崇)하고 백성을 비하하며, 아랫사람에게는 각박하고 윗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되었다. 이렇듯 백성은 한결같이 목을 위하여 태어난 것처럼 되어 버렸다.

오늘날 수령들은 옛날의 제후와 같아져 궁실과 수레, 의복과 음식, 그리고 좌우의 시종을 거느린 것이 마치 국군의 그것에 비길 만하다. 또 그들은 넉넉히 다른 사람을 경복(慶福)할 만하고, 그들의 형률(刑律)과 위엄은 충분히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하다. 결국 수령들은 오만스럽게 자신을 뽐내고, 태평스럽게 스스로 안일에 빠져서 자신이 목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만다.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켜 찾아가 판결을 구하면 번거로우니 하면서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하고, 굶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 스스로 죽은 것일 뿐이다.”라고 한다. 곡식과 피륙을 바쳐서 섬기지 않으면 곤장을 치고 몽둥이질을 하여 피가 흘러서야 그친다. 날마다 거둬들인 돈꾸러미를 헤아려 낱알이 기록하고, 돈과 피륙을 부고하여 전답과 주택을 장만하여, 권세 있는 재상가에 뇌물을 보내 뒷날의 이익을 기다린다. 이렇고서야 백성이 목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어니와, 어찌 이것이 타당한
(나) 이치이겠는가?

* 목 : 백성을 맡아 다스리는 자의 총칭.

39. (가)와 같이 묻게 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목과 백성은 결국 평등한 인간일 뿐이므로
- ② 백성들의 목에 대한 태도는 달라져야 하므로
- ③ 목과 백성의 본질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 ④ 목과 백성을 구별하는 의의를 알 수 없으므로
- ⑤ 현실 속의 목과 백성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40. (나)에 나타난 수령의 형태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가렴주구(苛斂誅求)
- ② 환골탈태(換骨奪胎)
- ③ 자중지란(自中之亂)
-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 ⑤ 자승자박(自繩自縛)

41. 글쓴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자신이 처한 시대 현실을 고뇌하고 있다.
- ② 기본적으로 다수의 백성을 신뢰하고 있다.
- ③ 태고의 정치 체제를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 ④ 신분제적 질서를 역사적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 ⑤ 통치자 선임과 법 제정 절차가 상응한다고 보고 있다.

42. 이 글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 ① 민본주의 회복
- ② 배금주의 추방
- ③ 충효 사상 고취
- ④ 사회 기강 확립
- ⑤ 분배 정의 실현

43. 글쓴이가 백성을 보는 관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2 점]

- ① 천하의 공통된 원리는 통치자가 다른 사람을 사역(使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령(使令)과 노복은 관직에 있는 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 유헤원(柳馨遠)

- ② 옛날에 법을 만드는 일은 모두 백성을 이롭게 하고 풍속을 선도하려는 뜻에서 비롯하였다. 형벌을 가하는 데는 공평하게 하고, 털끝만큼도 사사로운 편견이 없었다.

— 우하영(禹夏永)

- ③ 인주(人主)가 백성을 존중하면 천자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필부가 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백성이란 ‘임금의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이수광(李睟光)

- ④ 한 나라의 일은 마땅히 온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도모해야 한다. 한 나라의 공론은 온 나라 사람과 함께 생각하는 의논이다.

— 최한기(崔漢綺)

- ⑤ 백성 개개의 힘은 지극히 작지만 그 백성의 도움이 있어야 큰 일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백성을 이롭게 하는 길밖에 없다.

— 이익(李滉)

- 정답: 39. ⑤ 40. ① 41. ④ 42. ① 43. ①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학은 ㉠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聖學)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제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라 표현한다.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居敬),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窮理),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力行)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제론으로 이어진다.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제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이는 『만언봉사』(1574)에서 잘 나타난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언봉사』이다.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受敎)’이다.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錄)’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에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大典)’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꾸준한 정편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良法美意)’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항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렸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성헌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헌을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 이이의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성학은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 ② 『성학집요』에는 유학의 이념이 조선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 ③ ‘수교’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다.
- ④ ‘대전’에 오르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폐단이 없었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⑤ 《경국대전》은 확정된 이후에도 시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본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17.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으로서 여기에도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
- ②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이’와 대비된다.
- ③ 법제는 ‘이’에 속하지 않지만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할 대상이다.
- ④ 탁한 기질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이’라 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
- ⑤ 모든 사물들은 동일한 ‘이’를 갖지만 서로 다른 ‘기’로 말미암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18. ㉠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기’와 ‘치인’은 각각 ‘이’와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한다.
- ② ‘이기지묘’는 ‘수기’와 ‘치인’의 상호 대립적이고 분리 가능한 특징을 설명해 준다.
- ③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은 모두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이통기국’은 ‘수기’와 ‘치인’을 통해 ‘성인’이 지닌 기질적 병폐의 극복이 가능함을 말해 준다.
- ⑤ ‘수기’와 ‘치인’을 위한 기질 변화 방법으로는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역행’이 있다.

19. 윗글의 ‘율곡’과 <보기>의 ‘플라톤’의 견해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플라톤은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와 비물질적이고 불변적이고 완벽한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이상 세계를 구분한다.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마음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상 세계에서 영혼으로 존재하면서 이데아를 직접 접했던 인간은, 태어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상실한다. 물질의 한계로 인해 이데아의 완벽함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해 내려 한다면 그만큼 좋은 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 통치자가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 왕’이다.

- ①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물질과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
- ②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③ 율곡의 ‘성인’은 플라톤의 ‘철학자 왕’과 달리 수양보다는 기억에 의존하여 통치한다.

- ④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 ⑤ 율곡이 생각하는 이상 사회는 플라톤의 이상 세계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20. 윗글에 나타난 ‘율곡’의 법제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의 실천으로서 법제 개혁을 주장한다.
- ②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국왕에게 선왕의 법을 개혁할 것을 건의한다.
- ③ 조종성헌 존중의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법제 개혁이 가로막히는 경향을 비판한다.
- ④ 삼강과 같은 불변적 가치를 거론하는 까닭은 결국 법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⑤ 《경국대전》이 확정된 이후 연산군 때 제정된 악법들은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숙종’을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숙종 25년(1699) 회양부사 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했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 숙종은 꾸짖었다. “《경국대전》은 역대 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 온 성스러운 규범이다. 결코 멋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왕에게 법을 잘못 적용하라고 하는가? 갑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무법의 나라가 된다.”

여기서 숙종과 대신들은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 (가) 《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 (나) 《경국대전》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관리로 임용하지 않는다.”
- (다) 《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 ① 숙종은 갑의 행위에 (다)를 적용하는 것이 조종성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군.
- ② 숙종은 완성된 지 20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군.
- ③ 숙종이 《대명률》의 규정인 (다)를 적용하려는 것은 ‘대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태도라 해야겠군.
- ④ 숙종이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나)가 양법미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군.
- ⑤ 숙종은 선왕의 법을 적용하는 대신들의 방식에는 불만이지만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보는 데는 동의하는군.

◆ 10 LEET 언어이해 7~9번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시대의 실정법 체계는 한편으로 <대명률(大明律)>과 또 한편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등 국전(國典)의 양대 지주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를 전율(典律) 체제라고 한다. 이러한 체계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당초에 조선의 건국자들은 조선을 성문법에 의하여 전일적(全一的)으로 통치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국전 편찬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 완비까지는 시일이 걸리므로 가장 시급한 과제부터 처리하려 했다. 그것은 형사 사법 체계 혼란의 극복이었다. 조선의 건국자들은 그 해결책으로 기성의 형법을 그대로 가져와 쓰는 방안을 택하였다. 그리하여 명나라에서 만든 형사법인 <대명률>이 수용되었는데, 태조의 즉위 교서는 이를 언급하고 있다. 이 <대명률>은 보편적인 범죄의 다양한 양상을 일관된 체계 하에 규정하면서도 신분의 차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명률>은 그것이 외국의 형법이었기 때문에 국전의 편찬과 맞물려 다양한 수용 양태를 보였다. 첫째, <대명률>에 따라 조선의 관행이 변경되는 것이었다. 예컨대 죄질에 상관없이 칼[枷]을 씌우고 있던 조선의 행형 관행이 장형(杖刑) 이상의 범죄에만 칼을 씌우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둘째, <대명률>의 규정이 조선의 실정에 맞추어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처제와 형부 간의 간통의 경우 <대명률>에 의하면 일반 간통으로 처벌되나, 조선에서는 데릴사위제를 취하던 전통에 따라 일반 간통보다 가중하여 처벌하였다. 둘째의 경우 중 국전에 수록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자식이 부모를 고발한 경우 <대명률>은 무고(誣告)가 아닌 이상 사형보다 낮은 형벌로 규정하였지만, 국전은 사형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대명률>에는 없었지만 형사 사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적 규정을 국전에 두기도 하였다. 예컨대 지방의 관찰사가 사형 판결을 직접 내릴 수 없게 한 규정이 그것이다.

한편 전 국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성문 법전의 완비에는 시일이 걸렸다. 그 이유는 조선 후기까지 이어진 독특한 법전 편찬 과정에 있었다. 조선시대 제정법의 원천은 왕명이었는데 이를 통상 '수교(受敎)'라고 한다. 보통 관청이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왕에게 보고하고 왕이 이를 승인하면 이것은 당해 관청에 대해서 유효한 입법으로 성립하였다. 그런데 수교는 계속하여 쌓여갔고, 전후의 수교 간에 그리고 서로 다른 관청에 내려진 수교 간에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법전 편찬은 전 국토의 전일적 지배와 함께 수교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각 관청에 내려진 수교 중에서 계속하여 적용할 것을 선택하고 수정하여 육조(六曹)의 행정 체계에 따라 이를 편찬하였다. 이 작업의 최초 결과물은 <경제육전(經濟六典)>으로 이것이 최초의 국전이었다. 그 뒤 새로운 수교가 쌓이자 이 수교들을 모아서 <속육전(續六典)>을 편찬하였는데 <경제육전>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는 고법(古法)인 <경제육전>과 모순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일시 시행되는 수교를 따로 수록한 국전인 '등록(騰錄)'을 별도로 발간하였다. 그리고 이 두 방식을 이후 법전 편찬의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속육전>의 증보와 등록의 발간만으로는 수교 간의 충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전대의 국전들을 모아서 수정하고 산삭(刪削)하여 이들을 대

체하는 법전을 편찬하게 되는데 이것이 <경국대전>이다.

<경국대전> 중의 형전(刑典)은 <대명률> 수용 과정의 산물이었다. 일반적인 범죄의 처벌은 <대명률>에 따르고, 조선의 특별한 사정에 관련된 규정은 따로 만들어 <경국대전> 형전에 수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전율의 관계는 "<경국대전>에 의하여 <대명률>을 쓰되, <경국대전>, <속대전>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二典)에 따른다."라고 한 <속대전> 형전의 용률조(用律條)에서 확인된다.

7. 위 글의 서술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경제육전>과 <속육전>은 <경국대전>을 보완하였다.
- ② '등록'에 수록된 수교는 <경국대전>에 포함되지 않았다.
- ③ <경국대전>의 편찬 이후에 수교는 법전 편찬에 사용되지 않았다.
- ④ <경국대전>에 수록되지 않은 수교가 '등록'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였다.
- ⑤ <경제육전>에 수록된 수교는 <속육전>에 수록된 수교와 입법 시기가 겹치기도 하였다.

8. 위 글로부터 조선시대의 법 제도에 관하여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집권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외국 형법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 ② 국전들 간의 충돌 문제로 전율 체계의 출현이 지연되었다.
- ③ 법 적용 기간을 고려해 법전 종류를 달리하여 편찬하였다.
- ④ 성문법주의를 취하였으나 관습이 고려되기도 하였다.
- ⑤ 법전을 편찬할 때 고법이 존중되고 있었다.

9. 위 글로 보아 타당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조건 : <대명률>, <경국대전>, <속대전>을 적용한다.

- ㄱ. 상민(常民)의 살인 사건에서 관찰사는 <대명률>과 국전의 관련 규정 중 후자를 적용하였지만 직접 사형 판결을 내리지 못하였다.
- ㄴ. 자식이 아버지를 폭행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대명률>과 <경국대전>의 관련 규정 중 후자를 적용하였다.
- ㄷ. 처가 남편의 원수를 살해한 사건에서 <대명률>과 <속대전>의 관련 규정 중 전자를 적용하였다.
- ㄹ. 양반의 절도 사건에서 <대명률>에 관련 규정이 있으나 국전에는 없어 처벌하지 못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의 법제에 대해 ‘전율(典律) 체제’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는데, 『경국대전』과 중국의 『명률』을 법제의 근간으로 설정하는 이론이다. 이 견해에서는 조선이 ‘예주법종(禮主法從)’의 예치주의를 표방했지만, 『경국대전』을 포함하여 많은 법전을 편찬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법주예종(法主禮從)’의 법치주의 국가였다고 주장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장 대표적 법전인 『경국대전』을 오늘날 헌법적 위치에 비견하기도 한다.

예와 법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이 있는데, 예를 자율적 도덕률로, 법을 타율적 강제 규범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흔한 논의이다. 이 외에도 예는 법과 도덕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 규범이라든가, 예도 법의 일종으로 자연법에 해당하며 법은 실정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에 쓰인 예나 법의 용법에 포함되었을 다양한 요소가 현재 사용되는 하나의 개념으로 치환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과거에 사용된 예나 법 개념에 담긴 전체 요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의 개념에 포섭되는 요소를 전제로 이에 상응하는 개념들이 과거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전율 체제 이론은 조선 시대 법체계의 일부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데, 조선 시대 형법에 한정해서 『명률』과 『경국대전』 『형전』이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이다. 이 이론은 또한 예치와 법치를 대립적 개념으로 설정하는데, 전통 시대의 예와 법을 대립적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오늘날 법이라 일컫는 많은 부분을 조선 시대에는 예라고 불렀다. 국가의 통치 체제를 정해 놓은 법전의 전형으로 여겼던 『주례』는 유교의 대표적 예서의 하나였다. 조선 시대에 법으로 명시되었던 『경국대전』도 그 서문에서 『주례』를 모델로 편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주례』를 전범으로 삼았다는 사실 자체가 『경국대전』이 이념적인 정당성을 갖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현대의 법 개념에 상응하는 조선 시대의 어휘는 ‘예악형정(禮樂刑政)’이었다. 유교 정치 철학을 담고 있는 『예기』에는 예악형정이 자주 언급된다. 이 책의 핵심은 통치자가 성인(聖人) 군주이어야 하며, 덕을 갖춘 성인 통치자만이 예악형정을 제대로 정비할 수 있고, 예악형정이 제대로 정비되어야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군주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예악형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예악형정은 현대적 의미로 국가의 모든 제도와 법체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가 임의로 제정될 수는 없다. 유교 사상에 의하면, 예는 어디까지나 성인이 천(天)에 근거를 두고 만드는 것이었다. 인간이 만든 법 제도의 일종이라는 면에서 전통 시대의 예와 오늘의 법은 상통하는 점이 있다.

조선에는 예를 직접 조문화한 『국조오례의』라는 법전도 있었다. 『국조오례의』는 유교적 국가례의 전통에 따라 제사와 관련된 길례(吉禮), 각종 행사와 관·혼례를 규정한 가례(嘉禮), 국가 간의 관계와 군사 관련 사항을 수록한 빈례(賓禮)와 군례(軍禮), 그리고 장례 절차에 대한 흉례(凶禮) 등 다섯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책의 내용은 국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한편 『경국대전』 『예전』에서는 예에 관한 사항을 『국조오례의』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책을 『명률』과 동일한 방

식으로 예에 관한 법원(法源)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조선에는 적어도 『경국대전』, 『명률』, 『국조오례의』의 세 가지 법전이 있었던 셈이다. 세 가지 법을 ‘예전율(禮典律)’이라 부를 수 있는데, ㉠ 예전율 체제는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은 왕조의 기본 법체계였다.

『경국대전』을 헌법에 비견하는 것은 전(典)의 범주만을 헌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경국대전』은 군주가 관료에게 내린 명령인 수교(受敎)를 근거로 법전화한 것인데,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행정법에 가깝다. 율(律)은 형사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용상 통치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의 기능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통치자의 권력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자의적인 행사를 억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제주의에 대비되는 입헌주의 정치 체제의 핵심이 바로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는 데 있기 때문이다. 예에는 국가 의식에서 일상의 관혼상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가 있었는데, ㉡ 유교 국가에서 군주는 예를 정비하고 준수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조선 시대에는 예가 군주권을 제약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였다.

13. 글쓴이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 ① 예치를 표방한 조선의 법체계는 통치권을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장치였다.
- ② 조선에서 『명률』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것은 국왕의 수교와 무관하다.
- ③ 유교 국가에서는 입법의 권리를 통치자보다는 기구와 제도에 두고 있었다.
- ④ 현대적 법 개념을 적용해도 예치와 법치의 대립적 이해가 해소되지 않는다.
- ⑤ 전율 체제 이론이 분석하는 법 제도는 조선 시대 예약형정의 범주를 포괄한다.

14. 위 글의 ㉠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학자는 이상적 군주상을 『예기』에서 찾았을 것이다.
- ② 조선은 사신을 맞이하는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을 것이다.
- ③ 명나라에도 조선의 『국조오례의』에 상응하는 예서가 있었을 것이다.
- ④ 관원이 조상 제사를 지내는 사항은 성문화된 법 규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 ⑤ 유교 경전과의 내용적 합치 없이 국가 법제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15. ㉡의 취지에 가장 가까운 진술은?

- ① 천하 국가를 경영하려면 다섯 가지 예를 버리고 할 수 없습니다. 오래가 여러 성군(聖君)이 정성껏 다듬는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정밀해지고, 천지의 질서에서 세세한 의례의 절차에까지 정연하여졌습니다.
- ② 주상 전하께서는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업무를 보는 정전(正殿)을 피하시고 교지를 내려 의견을 물으시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근면하게 하는 도를 다하신 것이오라 조정의 신하들이 어찌 품은 뜻을 아뢰지 않겠습니까?
- ③ 형(刑)이란 부득이한 것이고, 가장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공경하고, 공경하라. 오직 형벌은 신중히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전하께서는 지극한 덕으로 불쌍히 여기시어, 형벌의 남용을 금하시는 좋은 법을 만드셨습니다.
- ④ 경전에 기록된 바인 ‘신부를 맞이하여 오는 친영(親迎)의 예’를 전하께서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혼(國婚)에서 몸소 실천하시어 이 땅의 백성에게 옛 제도가 실현될 수 있음을 보이시고, 동방에서 성인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게 하셨으니, 실로 조종 만민의 복이라 할 것입니다.
- ⑤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장인(匠人)이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상하가 서로 의지하여야 집이 오래갈 것입니다. 위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리고 아랫사람이 위사람을 받들어야 나라가 이에 편안할 것이므로 전하께서는 성현의 가르침을 펼치시기 위하여 배움의 제도를 세워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 13 LEET 언어이해 4~6번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성종 연간, 안정형의 아내 김 씨의 사내종 금동과 계집종 노덕은 김 씨의 옷을 훔치고 중 각둔의 옷을 가져온 뒤, 간통 현장에서 얻은 것이라며 추잡한 소문을 내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사내종 끝동이 금동의 말을 듣고 김 씨의 옷을 김 씨의 사내종 막동에게 전하여 말아 두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안정형의 사촌 형수인 간아가 김 씨를 내쫓고 싶어 꾸민 일이었고, 결국 무고로 밝혀졌다.

노비가 상전을 모해(謀害)한 데 대한 규정은 명률(明律)에 없다. 의금부에서는 노비들에 대하여 명률에 있는 다음 두 조문의 적용을 따져 보았다.

- 모반(謀叛: 본국을 배반하고 타국을 몰래 따르려 모의함.)의 경우 공모자는 주범과 종범을 가리지 않고 모두 참형에 처하며, 알면서 자수하지 않은 자는 장 100, 유 3,000리에 처한다.
- 모반대역(謀反: 사직을 위태롭게 하려 모의함. 大逆: 종묘, 왕릉, 궁궐을 훼손하려 모의함.)의 경우 공모자는 주범과 종범을 가리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하며, 실정을 알면서 고의로 숨겨 준 자는 참형에 처한다.

의금부는 결국 간아는 장 100, 유 3,000리, 금동과 노덕은 참형, 막동과 끝동은 장 100, 유 3,000리로 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계본을 올렸다. 그런데 막동과 끝동의 형량에 대해서는 큰 논의가 있었다. 이를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에서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성종 8년 12월 23일]

동부승지 이경동이 의금부의 계본을 가지고 와서 아뢰었다.

“중 끝동이 금동의 말을 듣고 실정을 알면서도 상전과 각둔의 의복을 막동에게 가져다 준 죄와 중 막동도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말아 둔 죄는 형이 장 100, 유 3,000리에 해당합니다.”

임금이 좌우에 “어떠한가?” 하고 물었다.

영의정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막동과 끝동이 필시 그 모의를 알았으니 그 죄도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자, 임금은 “그렇지.”라고 말하였다.

이경동이 아뢰었다.
 “모반(謀叛)이더라도 그 모의에 참여한 게 아니면 죽이지는 않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그 말은 본국을 배반하고 타국을 몰래 따르려 했다는 것이지, 사직을 위태롭게 하려 한 죄가 아니라는 게로구나. 사직을 뒤흔들려는 모의가 있고 그것을 아는 자가 있다면,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죽이지 못할 게 뭐 있겠는가? 막동들이 상전을 모해한 일은 이와 무엇이 다른가?”
 좌참찬 임원준과 지평 강거효도 “막동과 끝동이 그 죄에 참여하여 알았으니 죽여야 마땅한 일입니다.”라고 호응하였다.
 형조 참의 이맹현이 아뢰었다.
 “율문에서는 모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죽이고 그 모의를 안 경우에는 장을 쳐 유배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모의에 참여한 경우’란 처음부터 그 모의에 참여한 것을 말하고, ‘그 모의를 안 경우’란 뒤에 그 모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률상 사형에 이르지 않으니 죽이는 것은 아직 안 됩니다. 다시 국문하여 죄를 정하옵소서.”
 임금은 “막동과 끝동이 사형인 데에는 의심이 없지만, 공경들과 더불어 널리 의논해 보자.”라고 말하였다.
 [성종 8년 12월 24일]
 임금이 여러 정승과 육조의 당상을 불러들였다. 대간(臺諫)에서 간아와 관련된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자, 임금이 말하였다.
 “사형의 죄는 지극히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경들과 더불어 의논하고자 하니 말들 해 보라.”
 달성군 서거정이 아뢰었다.
 “막동은 안정형 집의 늙은 종으로 옷을 맡아 주었고, 끝동은 금동의 말에 따라 옷을 받아다 주었으니, 모두 사정을 아는 이들입니다. 지금 ‘알면서 자수하지 않은’ 데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종들은 ‘실정을 알면서 숨겨 준 죄’로써 죽여야 마땅합니다.”
 영돈녕부사 노사신이 아뢰었다.
 “끝동은 나이 어리고 어리석으니 그 주인의 의복을 가지고 왕래하였다 한들 저가 어찌 그 주인을 모해하려는 것인 줄 알았겠습니까? 죽여서는 안 됩니다.”
 서거정이 맞섰다.
 “나라의 난신과 집안의 역노(逆奴)는 마찬가지로입니다. 끝동이 이미 주인을 해치는 데 간여하였는데 죽인들 뭐가 해롭겠습니까?”
 이승소가 아뢰었다.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벼운 쪽으로 정해야 합니다. 끝동은 모르는 놈입니다. 어찌 그렇게까지 죄를 정할 수 있었습니까?”
 많은 신료들의 의견이 서거정을 따랐다. 임금이 말하였다.
 “죽여야 할 것을 죽이지 않는 일도 옳지 못하고, 죽이지 않을 것을 죽이는 일도 옳지 못하다. 막동과 끝동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매우 법에 합당하다. 막동과 끝동은 적용 조문을 바꾸도록 하고, 나머지는 올린 대로 시행하라.”
 의금부가 적용 조문을 바꾸어 막동과 끝동을 참형의 율로 처벌하도록 아뢰니 그대로 윤행하였다.

4. 의금부에서 노비들의 죄를 논할 때, 실제로 삼은 명률 규정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꼭 맞는 율문이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율문을 끌어다 따져 보고 적용할 죄명을 정한다.
- ② 죄로 규정되지 않았던 행위가 새로 제정된 율문에 죄라고 정해진 경우, 새 율문에 따라 처벌한다.
- ③ 국왕이 특별히 처단한 사례라도 법조문화되지 않았을 경우, 그 것을 율문으로 삼아 끌어들이지는 못한다.
- ④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였는데도 그에 해당하는 율문이 없는 경우, 따로 율문을 제시하지 않고서 처벌할 수 있다.
- ⑤ 하나의 행위로 두 율문의 죄를 범했을 경우, 그 가운데 무거운 죄로 처벌하며, 두 죄의 경중이 같으면 그 하나로 처벌한다.

5. 위 글에서의 법 적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간아는 김 씨와 노주(奴主) 관계가 아니어서 간아에 대하여 모반(謀叛)이나 모반대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금동과 노덕에 대하여는 의금부에서 올린 대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들의 죄는 모반(謀叛)으로 판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막동의 죄를 모반(謀叛)이라 보는 쪽은 막동이 김 씨를 해하려 했다는 것보다는 간아와 내통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 ④ 끝동의 죄를 모반대역이라 보는 쪽은 끝동이 모해의 실정을 알았다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⑤ 막동과 끝동의 행위가 모해를 공모한 것으로 판정된 까닭에 의금부는 적용 조문을 바꾸어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6. 위 글에서 판결을 이끄는 성종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형 판결과 관련하여 조정의 공론을 거치려는 것으로 보아 국왕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려고 한다.
- ② 노비의 상전을 사직에까지 건주려 하는 것으로 보아 가(家)의 위계질서를 국(國)의 위계질서에 준하는 것으로 여긴다.
- ③ 여러 반론 속에서 사형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아 소수 의견이라도 그것이 옳다면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의금부가 올린 계본에 대하여 적용 조문을 바꾸어 처벌하라는 것으로 보아 법규에 근거한 법 집행의 원칙을 염두에 둔다.
- ⑤ 동부승지 이경동의 견해에 대해 모반대역의 적용을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적용 조문들의 차이를 정확하게 안다.

◆ 12 MDEET 언어추론 32~34번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간의 경과가 일정한 법적 효과를 낳는 것을 ‘시효’라 한다. 한 예로 민법 제245조 제1항에는, 소유할 생각으로 부동산을 20년간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점유해 온 경우, 그에 대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한다. 하지만 권리를 얻는 쪽의 다른 한편에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조선 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경국대전》에는 “전택(田宅)에 대하여 5년이 지나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실려 있다. ‘과한법(過限法)’이라 불린 이 규정에 대해서도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음을, 《경국대전》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나 일어난 한 사건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성종 20년 12월, 조정에서는 서원군의 아들 이추가 제기한 소에 대해 논의가 벌어졌다. 사건은 순경 옹주가 문서를 작성하여 양자인 서원군에게 논밭을 물려준 데서 비롯한다. 그 문서에는 서원군이 죽으면 자신의 양소자인 이추에게 다시 물려주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서원군은 순경 옹주의 뜻과는 달리 생전에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서는 성종 6년에 죽었다. 그 재산을 이제 이추가 찾으려 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재판을 담당하는 한성부는 서원군이 처분했던 대로 판결하자는 의견을 올렸다. 종실의 일인 데다 강상(綱常)의 문제까지 엮인 터라 조정에서는 큰 논의가 벌어졌다. 주요한 논쟁은 이러했다.

이극배: 서원군이 원소유자의 본뜻을 어겼지만, 오랜 세월 경과해 오는 것을 이제 와서 갑자기 거슬러 고칠 수 없다. 《경국대전》에 관련 규정이 있으니 이를 마땅히 금석처럼 여겨 따라야 한다.

윤 호: 서원군은 원소유자의 본뜻을 돌아보지 않고서 제 마음대로 아들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이추는 원소유자의 본뜻에 의지하여 서원군의 명령을 좇지 않았으니, 양쪽 모두 옳지 않다. 그러나 본시 순경 옹주의 소유물이니 의당 그 뜻을 따라야 한다.

유 순: 순경 옹주가 논밭을 이추에게만 전해 주라고 하였는데, 이는 부녀자의 치우친 사랑이다. 서원군은 양어머니의 뜻을 저버리고 그것을 아들딸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허물이 있다. 이추는 아들 된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재산에만 몰두하여 아버지의 허물이 들추어지게 만들었다. 종실에서 이렇진대,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논밭은 서원군의 처분에 따르고 이추는 죄를 다스려 풍속에 대한 경계로 삼아야 한다.

모든 의견을 다 듣고 나서 성종은 이렇게 ㉠ 전교하였다.

서원군이 논밭을 이추에게만 주지 않고 다른 아들딸들에게도 나누어 준 것은 옳지 않으며, 이추가 소를 제기한 일은 아들 된 뜻이 없는 것이니, 논밭을 국고에 귀속하고 이추를 처벌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의견을 물었다. 대부분 동조하였지만, 반대 의견들도 제기되었다.

홍 응: 서원군이 양어머니의 지시를 어긴 잘못은 이추가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른 것만큼 심하지 않다. 그런데 이추는 소를 제기하여 아버지의 허물이 드러나게 했으니 아들 된 도리에 옳지 않다. 아들의 소 제기로 인해 논밭을 국고에

귀속하면 백성들을 잘못 이끌게 된다. 마땅히 서원군의 과실을 용서하고 이추의 죄를 다스리는 것이 사리에 근접하고 경세의 법이 된다.

송철산: 양쪽 모두 옳지 않으니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마땅할 듯 하나,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지 오래인데 하루아침에 몰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원소유자의 다른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어 후세의 거울이 되게 하자.

마침내 성종은 다음과 같이 ㉡ 전교를 내렸다.

서원군이 원소유자의 뜻을 좇지 않고 마음대로 처분하였으니 국고에 귀속해도 되지만, 《경국대전》에 5년이 지나면 재판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니 서원군의 처분대로 한다. 이추는 소를 써 아버지를 거슬렀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종부사로 하여금 신문하도록 한다.

이 사건 이후, 과한법은 소송상 중요한 항변으로 원용되었다. 하지만 부당한 침탈을 확정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들의 고민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점유 취득 시효 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고충은 마찬가지이다.

32.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과한법의 성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 예기치 못한 분쟁이 제기되는 것을 억제한다.
- ㉡ 평온의 질서를 추구하는 법의 이념에 봉사한다.
- ㉢ 정당한 권리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감수한다.
- ㉣ 지속된 현상이 규명된 진실에 맞추어 변경되기를 요구한다.
- ㉤ 일정한 행위의 기반 위에 새롭게 형성된 이해관계를 보호한다.

33. 성종의 생각이 ㉠에서 ㉡으로 바뀐 계기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 보편타당하고 변함없는 가치를 법규로 도출하여야 한다는 자연법사상을 인정하였다.
- ㉡ 확립적 규제보다는 정당한 개인 의사의 실현이 더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 불가침의 윤리 규범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법 질서 유지의 근간이라는 점을 자각하였다.
- ㉣ 법과 도덕의 갈등 상황에서는 오랜 관습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인식하였다.
- ㉤ 통치권자의 자의가 아닌 객관적 규범에 근거하여 통치한다는 법치주의의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34. 여러 관료들의 의견에 대한 논평으로 적절한 것은?

- ㉠ 이극배는 순경 옹주가 적법한 유언을 하였는데도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점에서 윤호의 견해와 대립한다.
- ㉡ 윤호는 다투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이추가 승계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유순의 견해와 일치한다.
- ㉢ 유순은 재산의 승계 문제에만 풍속의 교화라는 이념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홍응의 견해와 대립한다.
- ㉣ 홍응은 서원군의 처분 행위를 유효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송철산의 견해와 대립한다.
- ㉤ 송철산은 순경 옹주의 재산에 대하여 이추의 형제들이 승계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극배의 견해와 일치한다.

◆ 15 LEET 언어이해 1~3번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신(臣) 유종원(柳宗元)이 었드려 살펴보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 다. 측천무후 시절에 동주(同州)의 하규(下邳)에 서원경(徐元慶) 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 상(爽)이 현의 관리인 조사온(趙 師鑑)에게 죽었다고 하여 마침내 아버지의 원수를 쫓러 죽인 뒤 제 몸을 묶어 관에 자수하였습니다. 그때 진자양(陳子昂)은 그를 사형에 처하되 정문(旌門)을 세워 주자고 건의하였으며, 또 그 내용을 법령에 넣어 항구적인 법으로 삼자고 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듣기를, 예(禮)의 근본은 무질서를 막고자 하는 것이니, 만약 예에서 해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데 자식 된 이가 사람 을 죽였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刑)의 근본도 무 질서를 막고자 하는 것이니, 만약 형에서 해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데 관리 된 이가 사람을 죽였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근본은 서로 합치하면서 그 작용이 이끌어지는 것이니, 정문과 사형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문을 세워 줄 일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남용으로서 형을 지나치게 적용하는 것 이 됩니다. 사형에 처할 일에 정문을 세워 주는 것은 참람으로서 예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과연 이것을 천하에 내보 이고 후대에 전하여서 의를 좇는 이가 나아갈 곳을 모르게 하고 해를 피하려는 이가 설 곳을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법으로 삼아야 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무릇 성인(聖人)의 제도에서 도리를 밝혀 상벌을 정하도록 한 것과 사실에 터 잡아 시비를 가리도록 한 것은 모두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에서도 진위를 가려내고 곡직을 바로 하여 근본을 따져본다면, 형과 예의 적용은 뚜렷이 밝혀집니다.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만일 원경의 아버지가 공적인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도 사온이 죽였다면 이는 오직 사사로운 원한으로 관리의 기세를 떨쳐 무고한 이를 괴롭힌 게 됩니다. 더구나 고을 수령과 형관은 이를 알아볼 줄도 모르고 위아래로 모두 몽매하여 울부짖는 호소를 듣지 않았 습니다. 그리하여 원경은 원수와 같은 하늘 아래서 사는 것을 몹시 부끄럽게 여기며 항상 칼을 품고 예를 실행하려는 마음을 지니다가 마침내 원수의 가슴을 찔렀으니, 이는 곳곳이 자신을 이겨낸 행위로서 그때 죽더라도 여한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를 지키고 의를 실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담당 관리는 마땅히

부끄러운 빛을 띠고 그에게 감사하기에 바쁠진대 어찌 사형에 처한단 말입니까.

혹시 원경의 아버지가 면할 수 없는 죄를 지어 사온이 죽인 것 이었다면 그것은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관리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죽은 것입니다. 법을 원수 로 삼을 수야 있겠습니까. 천자의 법을 원수 삼아 사법 관리를 죽였다면, 이는 패악하여 임금을 능멸한 것입니다. 이런 자는 잡아 죽여야 국법이 바로 설진대 어찌 정문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진자양은 앞의 건의에서 “사람은 자식이 있고 자식은 반드시 아버지가 있으니, 아버지를 위한 복수가 이어진다면 그 무질서는 누가 구제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를 매우 잘못 이 해한 것입니다. 예에서 이야기하는 복수는, 사무치는 억울함이 있 는데도 호소할 곳이 없는 경우이지, 죄를 저질러 법에 저촉되어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네가 사람을 죽였 으니 나도 널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곡직을 따져보지도 않 고서 힘없고 약한 이를 겁주는 것이 될 뿐이며, 또한 경전과 성 인의 가르침에 심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주례』에서 “조인(調人)이 못사람들의 복수 사건을 담당하여 조정한다. 살인이라도 의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복수를 금지한다. 복수는 사형에 처한다. 이를 다시 보복 살해하면, 온 나라가 그를 복수할 것이다.” 하였으니, 어찌 아버지를 위한 복수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춘추공양전』에서는 “아버지가 무고하게 죽었다면 아들은 복수할 수 있다. 아버지가 죄 때문에 죽었는데 아들이 복수한다면, 이는 무죄배의 짓거리로서 복수의 폐해를 막 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위의 사건을 판단 해 보면 예에 합치합니다. 무릇 복수를 잊지 않는 것은 효이며, 죽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의입니다. 원경이 예를 저버리지 않고 효를 지켜 의롭게 죽으려 했으니, 이는 바로 이치를 깨치고 도를 들은 것입니다. 이치를 깨치고 도를 들은 사람에 대해 왕법(王法)이 어찌 보복 살인의 죄인으로 보겠습니까. 진자양은 도리어 사 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니, 그것은 형의 남용이며 예의 훼손입니다. 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뚜렷합니다.

신의 간언을 법령에 반영하시어 사법 관리로 하여금 앞의 건의에 따라 법을 집행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삼가 아뢰었 나이다.

- 유종원, 「복수에 대한 건의를 논박함」

1. 위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진자양은 서원경의 행위가 예를 어긴 것이라고 보았다.
- ② 호소할 곳 없는 백성에 대한 유종원의 염려가 나타난다.
- ③ 보복 살인의 악순환을 경계하는 진자양의 고심이 엿보인다.
- ④ 유종원은 진자양의 건의 내용이 갖는 자체 모순을 분석하였다.
- ⑤ 유종원은 서원경의 복수를 효의 실천으로 보아 높이 평가하였다.

2. 위글에 비추어 볼 때 예와 형에 관한 서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는 성인의 가르침과 제도가 훌륭한 전거가 된다.
- ② 예는 의를 좇는 이가 나아갈 바이자, 도리를 밝혀 상벌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 ③ 형은 해를 피하려는 이에게 의지가 되며, 사실을 기반으로 시비를 가리는 수단이 된다.
- ④ 형은 범죄 행위를 규정하고 그것을 강제력으로 금지하여 합당한 행위를 유도하는 규칙이 된다.
- ⑤ 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처벌 법규인 형과는 서로 근본을 달리하는 규범이 된다.

3. 위글에 나타난 유중원의 견해로 진자앙의 입장과 대립하는 것은?

- ① 한 사건에서 죄에 대한 처벌과 예에 대한 포상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고 본다.
- ② 어떤 경우라도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는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③ 예에 합당한 행위에 대하여 형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
- ④ 예와 형은 모두 존중되어야 할 규범이라고 생각한다.
- ⑤ 복수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 21 LEET 언어이해 10~12번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살펴보건대, ㉠ 상고 시대 법에서 오형(五刑)은 중죄인에 대하여 이마에 글자를 새기고(목형) 코나 팔꿈치, 생식기를 베어 내고(의형, 비형, 궁형), 죽이는(대벽) 형벌이었다. 다만 정상이 애처롭거나 신분과 공로가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오형 대신 유배형을 적용하였다. 나머지 경죄는 채찍이나 회초리를 쳤는데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돈으로 대속할 수 있도록, 곧 속전(贖錢)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과실로 저지른 행위는 유배나 속전 할 것 없이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배경을 밟고 범행을 저질렀거나 재범한 경우에는 유배나 속전 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형을 집행하였다.

형법은 선왕들이 통치에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도구는 아니었지만 교화를 돕는 수단이었고 백성들이 그른 것을 하지 않도록 역할을 해 왔다. 그렇다면 신체를 상하게 하여 악을 징계한 것도 당시에는 고심 끝에 차마 어쩔 수 없이 행하는 하나의 통치였던 것이다. ㉡ 지금의 법을 보면, 유배형과 노역형이 간악한 이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보다 더 무거운 형벌로 과도하게 적용하면 죽이지 않아도 될 범죄자를 죽일 수 있어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예전처럼 의형, 비형을 적용한다면, 신체는 다쳐도 목숨은 보전될 뿐만 아니라 뒷사람에게 경계도 되니 선왕의 뜻과 시의에 알맞은 일이다.

지금은 살인과 상해에 대하여도 속전할 수 있도록 하여, 재물 있는 이들이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도록 만드니, 무고한 피해자에게는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있겠는가? 그리고 살인자가 마을에서 편안히 살고 있으면,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는 효자가 어떻게 그대로 보겠는가? 변방으로의 유배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양쪽을 모두 보전하는 일이다. 선왕들이 중죄인에 대하여 죽이거나 베면서 조금도 용서하지 않은 것은 그 죄인도 또한 피해자에게 잔혹히 했기 때문이니, 그 형벌의 시행이 매우 참혹해 보이지만 실상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집행한 것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신체에 가하는 형벌인 육형(肉刑)으로 오형만 있었던 상고 시대에 순임금이 그 참혹함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유배, 속전, 채찍, 회초리의 형벌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요임금 때까지는 채찍이나 회초리에 해당하는 죄에도 목형이나 의형을 집행했다는 말인가? 그러니 오형에 처하던 것을 순임금이 법을 바로잡아 속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말은 옳지 않다. 의심스럽다든가 해서 중죄를 속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자들은 처벌을 면하고 가난한 이들만 형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의 사법기관은 응보에 따라 화복(禍福)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잘못 알고서, 죄의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여 복된 보답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죄 없는 이가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죄 지은 자가 되려 풀려나게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일일 뿐이니 무슨 복을 받겠는가? 지금의 사법관들은 죄수를 신중히 살핀다는 흠휼(欽恤)을 잘못 이해하여서, 사람의 죄를 관대하게 다루어 법 적용을 벗어나도록 해 주는 것으로 안다. 그리하여 죽여야 할 이들을 여러 구실을 들어 대부분 감형되도록 한다. 참형에 해당하는 것이 유배형이 되고, 유배될 것이 노역형이 되고, 노역할 것이 곤장형이 되고, 곤장 맞을 것을 회초리로 맞게 되니, 이는 뇌물을 받아 법을 가지고 논 것이지 어찌 흠휼이겠는가?

인명은 지극히 중한 것이다. 만약 무고한 사람이 살해되었다면,

법관은 마땅히 자세히 살피고 분명히 조사하여 더는 의심의 여지가 없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한 뒤에는 반드시 목숨으로 갚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죽은 자의 원통한 혼령을 위로할 뿐 아니라, 과부와 고아가 된 이가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을 위로할 수 있으며, 또한 천리를 밝히고 나라의 기강을 떨치는 일이다. 보는 이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할 뿐 아니라 후대의 징계도 되니, 또한 좋지 않겠는가.

지금은 교화가 쇠퇴하여 인심이 거짓을 일삼으며, 저마다 자신의 잇속만 챙기면서 풍속도 모두 무너졌다. 극악한 죄인은 죄를 받지 않고, 선량한 백성들은 자의적인 형벌의 적용을 면치 못하기도 한다. 또 강자에게는 법을 적용하지 않고 약자에게는 잔인하게 적용한다. 권문세가에는 너그럽고 한미한 집에는 각박하다. 똑같은 일에 법을 달리하고 똑같은 죄에 논의를 달리하여, 간사한 관리들이 법조문을 농락하고 기회를 잡아 장사하니, 그것은 단지 살인자를 죽이지 않고 형벌을 방기하는 잘못에 그치는 일이 아니다. 이 통탄스러움을 이루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 윤기, 「논형법(論刑法)」 -

11. 글쓴이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교화를 중시하고 형벌의 과도한 적용을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살인을 저지른 중죄인이 유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③ 인명이 소중하므로 사형과 같은 참혹한 형벌의 폐지에 찬성한다.
- ④ 형벌로 보복을 대신하려고 하는 응보적인 경향에 대해 반대한다.
- ⑤ 무고하게 살해된 피해자를 고려하면 의형은 합당한 처벌이라고 본다.

11. 윗글에 따라 ㉠, ㉡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경미한 죄에도 오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 ② ㉠에서는 중죄에 대한 형벌을 육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③ ㉡에서는 유배형도 정식의 형벌이므로 속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에서 오형에 해당하지 않는 형벌은 ㉡에서도 집행하지 않는다.
- ⑤ ㉠에서의 오형은 잔혹한 형벌이라 하여 ㉡에서는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12. 윗글과 <보기>를 비교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상고 시대에 유배형은 육형을 가해서는 안 되는 관료에게 베푸는 관용의 수단으로서 공식적인 형벌이 아니라 임시방편과 같은 것이었다. 또 속전은 의심스러운 경우에 적용한 것이지 꼭 가벼운 형벌에만 해당했던 것도 아니었다. 여기서 속은 잇는다[續]는 데서 따다가 대속한다[贖]는 의미로 된 것이니, 육형으로 끊어진 팔꿈치를 다시 붙일 수 없는 참혹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진 정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의 법에서 속전은 정황이 의심스럽거나 사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허용된다. 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유함으로 처벌을 요행히 면해서는 안 되며, 해당하는 경우이면 가난뱅이는 속전도 필요 없다. 죽여야 할 사람을 끝없이 살리려고만 한다면 어찌 덕이 되겠는가. 흠휼은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자를 죽이지 않으려는 것이지 살리기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 ①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보는 점은 두 글이 같은 태도이다.
- ② 속전의 남용에 대해 흠휼을 오해한 소치로 보는 점은 두 글이 같은 태도이다.
- ③ 상고 시대에 중죄를 속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두 글이 서로 달리 보고 있다.
- ④ 중죄에 대한 속전이 부자들의 전유물이므로 폐지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두 글이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이다.
- ⑤ 유배의 효과가 없을 때 의형이나 비형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글이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다.

◆ 17 LEET 언어이해 21~23번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성종 8년(1477) 조정에서는 여성의 재가(再嫁)를 둘러싸고 토론이 벌어졌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이십의 처 조 씨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조 씨의 오빠인 조식이 전 칠원현감 김주가 과부인 누이 집에 와서 유숙한 것을 두고 강간이라고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조사 결과 김주와 조 씨는 이미 성혼한 사이였으나, 중매를 거치지 않았다. 조식은 과부가 된 누이를 돌보지 않다가 그 누이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무고한 것이었다. 이렇게 끝날 뻔했던 사건이 부녀자의 재가 문제로 논제가 옮겨가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당시 성종이 전·현직 고위 관료 46명을 불러 부녀자의 재가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다음이 대표적인 의견들이었다.

㉠ 영동녕부사 노사신 등이 아뢰기를, “부인의 덕은 한 남편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자에게 재가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부모와 자식이 없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절개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국가에서 부녀자가 재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으니 그전 대로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 지중추부사 구수영 등이 아뢰기를, “사족(士族)의 여자가 일찍 과부가 되어 생계가 막막해서 부득이 재가한 경우와 부모의 명으로 재가한 경우는 형세상 어쩔 수 없는 것이므로 <경국대전>에서도 세 번 시집가는 것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있고, 집이 가난하지 않은데도 스스로 재가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정욕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금후 이 경우는 세 번 시집간 사례로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 예조참판 이극돈 등이 아뢰기를, “<경국대전>에, ‘재가한 부녀자에게는 작위를 주지 않고, 세 번 시집간 자는 실행(失行)한 자와 한가지로 아들과 손자에게 과거 응시와 현관(顯官: 특정한 요직) 제수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정상을 참작하여 법을 만든 것으로 풍속을 경계하고 장려하기에 적합하다. 결혼한 여자가 한 남편을 끝까지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만, 불행히 일찍 과부가 되어서 의탁할 곳이 없으면 그 재가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국가에서 사람마다 절의를 가지고 책임지우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일일이 논죄한다면 또한 어려울 것이니 <경국대전>에 따라서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 무령군 유자광 등이 아뢰기를, “예전에 정자(程子)가 가로되, ‘재가는 후세에 흠을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하는 것이다. 절개를 잃는 것은 지극히 큰 일이고, 흠을 죽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다’고 하였습니다. 세상 풍속이 절의를 돌아보지 않고 재가하고, 국가에 금령이 없어 절개를 잃은 자의 자손이 현관의 직에 오르는 일이 풍속을 이루며, 혼인을 주선하는 자가 없는데도 스스로 지아비를 구하는 자까지 있습니다. 금후로는 부녀자들의 재가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모두 실행한 것으로 처벌하고, 그 자손도 관직에 오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유자광의 의견에 동조한 사람은 세 명뿐이었다. 성종은, “전(傳)에 이르기를 ‘신(信)은 부녀자의 덕이니 한 번 함께 하였으면 종신토록 고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삼종지의(三從之義)라는 말이 있는 것인데 세상의 도리가 날로 비속해져 사족의 여자가 예의를 돌보지 않고 스스로 중매하여 다른 사람을 따르니, 이는 가풍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유학의 가르침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관직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여 풍속을 바로잡도록 하라.”라고 명하였다. 그에 따라 성종 16년(1485)에 수정된 <경국대전>에서는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고 어떤 관직에도 임용되지 못하도록 규정되었다.

한편, 이십의 처 조 씨는 친척이 혼인을 주선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시집간 죄로, 김주는 조 씨와 혼인하되 예를 갖추지 않은 죄로 <대명률>의 “화간(和姦)한 자는 장 80에 처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모두 처벌하고 이혼시켰다. 조 씨 사건으로 촉발된 논의는 결과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하락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재가의 상대가 된 남성이나 재혼한 남성에게 대한 처벌은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점도 당시 사회 분위기를 잘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21. 위글의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당시에는 <경국대전>에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도 다른 법률을 이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 ② 수정된 <경국대전>은 세 번 시집간 여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 번 시집간 여자에게 그대로 적용한 것이었다.
- ③ <경국대전>에서 재가를 규제하는 조항은 관직에 오를 자격이 없는 신분의 사람에게는 실효성이 없었을 것이다.
- ④ 성종은 부녀자의 재가가 유학의 기준으로 볼 때 풍속을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소수 의견을 받아들였다.
- ⑤ <경국대전>에서는 여자가 세 번 시집가는 것에 대해 실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자손들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였다.

22. ㉠~㉢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재가를 금지할 경우 과부들이 절개를 잃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 점에서 일치한다.
- ② ㉠은 새로운 법령을 만드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은 새로운 법령을 만드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 ③ ㉡은 부득이하지 않은 재가에 대해 기존 법률을 확대 적용하지는 의견이지만, ㉢은 기존 법률의 확대 적용에 반대하는 의견이다.
- ④ ㉠과 ㉢은 재가의 정황을 참작하지 않고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는 동일한 입장이다.
- ⑤ ㉡과 ㉢은 국가가 현실을 고려하기보다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풍속을 지키는 데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3. 위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사족의 딸인 목 씨는 첫 남편 강철호가 죽자 오빠 목인수의 중매로 남예건과 혼례를 올렸다. 재혼 당시 목 씨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친족으로는 목인수만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남예건에게도 자식이 없었다.

- ① 이십의 처 조 씨 사건과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도 목 씨는 조 씨와 같은 죄목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이다.
- ② <경국대전>이 수정되지 않았다면 목 씨와 남예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관직 진출에 법령상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다.
- ③ 수정된 <경국대전>에 따르면 목 씨와 남예건의 손자는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 ④ <경국대전>이 수정된 뒤에는 목 씨의 유죄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목 씨의 나이와 형편을 살폈을 것이다.
- ⑤ <경국대전>이 수정된 뒤에도 목 씨의 남편 남예건 본인에게 적용될 처벌 규정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려 말에는 관료들이 동시에 여러 처를 두는 경우나 처와 첩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토지나 봉작(封爵) 등을 누가 받을 것인가를 두고 친족 사이에 소송이 빈번하였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성리학적 가족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조선 태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중혼 규제 방침을 정하였다.

1413년(태종 13)에 사헌부에서는, “부부는 인륜의 근본이니 적처와 첩의 분수를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전 왕조 말에 이러한 기강이 무너졌으니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혼서(婚書)의 유무와 혼례식 여부로 처와 첩을 구분하고, 처와 첩의 지위를 바꾼 경우에는 처벌 후 원래대로 바꾸며, 처가 있는데도 다시 처를 취한 자는 처벌 후 후처를 이혼시키십시오. 만약 당사자가 이미 죽어 바꾸거나 이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처(先妻)를 적처로 삼아 봉작하고 토지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 ㉠ 규제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다음 해인 1414년(태종 14)에 대사헌 유현 등은 위 규제를 기본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 수정 보완 기준을 제시하였다. “세월이 많이 지나 증빙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은의(恩義)가 깊고 앎음과 동거 여부를 고려하여, 선처와는 은의가 약하고 후처와 종신토록 같이 살았다면, 후처라도 작첩(爵牒)과 수신전(守信田)을 주고 노비는 자식에게 균분(均分)하게 하십시오. 만약 처첩의 자식들 사이에 적통을 다투는 경우에는 신분, 혼서 및 혼례를 조사하여 판결하며, 처인지 첩인지에 따라 그 자식에게 노비를 차등 분급하게 하고, 세 명의 처를 둔 경우에는 선후를 논하지 말고, 그중 종신토록 같이 산 자에게 작첩과 수신전을 주되 노비는 세 처의 자식에게 균분하게 하십시오. 영락 11년(태종 13) 3월 11일 이후부터 처가 있는데 또 처를 얻은 자는 엄히 징계하여 후처와 이혼시키되, 그중 드러나지 않다가 아버지가 죽은 후 자손들이 적통을 다투면 선처를 적통으로 삼으십시오.”

이상의 기준은 이후 「육전등록」에도 수록되어 실시되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이 아버지의 다른 처와 어떤 관계로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논란이 발생하였다. 세종 때 이담 아들의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이담은 백 씨와 혼인한 상태에서 다시 이 씨에게 장가 들었다. 이는 태종 13년 이전의 일이어서 처벌의 대상은 아니었으나, 1448년(세종 30) 이 씨가 사망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백 씨의 아들인 이효손이 이 씨를 위한 상복을 입지 않자, 이 씨의 아들인 이성손이 사헌부에 고발한 것이다. 이효손이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를 두고 다음과 같이 조정 관료들의 의견이 갈렸다.

㉢ 집현전에서 아뢰기를, “예에는 두 명의 처를 두지 않는 것이 정도(正道)이지만, 전 왕조 말에 여러 명의 처를 두는 것이 너무 일반적이었으므로 한시적으로 모두 적처로 인정하였습니다. 「육전등록」에서 이미 여러 처를 인정하였으니 이효손은 이 씨를 위해 서도 상복을 3년 입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 예조에서 아뢰기를, “「육전등록」에서 여러 처를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국가에서 주는 작첩과 수신전은 한 사람에게 그쳤 습니다. 이는 국가가 정도를 지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 씨는 선처이고 이담과 평생 동거하였으니 그 의리가 이 씨와 같지 않습니다. 이효손이 이 씨를 위해 친모와 똑같이 한다면 친모를 내치는 꼴이 될 것이므로 상복은 1년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씨를 첩모로 대우하는 것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㉔ 이조판서 정인지는 아뢰기를, “예에는 두 명의 처를 두지 않는데, 『육전등록』에서 은의와 동거 여부를 고려함으로써 문란함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항구적인 법식으로는 삼을 수는 없으니, 두 아내의 아들들은 각각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만 상복을 입게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㉕ 경창부윤 정척은 아뢰기를, “이 씨가 이효손에게 계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육전등록』상 선처·후처의 법에 의거해서 이를 계모에 견주어 상복을 3년 입고, 훗날 백 씨의 상에는 이성손이 3년을 입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㉖ 어떤 이는 “이제라도 이 씨를 강등하여 첩모로 대우하여 첩모를 위한 상복을 입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4. 윳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㉑에서는 처와 첩을 구분할 때 생사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 ② ㉒에서는 처인지 첩인지에 따라 그 자식들에게 노비를 차등 분급하였다.
- ③ ㉑과 달리 ㉒에서는 처를 첩으로 바꾸거나 첩을 처로 바꾸면 처벌을 받았다.
- ④ ㉒과 달리 ㉑에서는 다처일 경우 모든 처와 이혼해야 하였다.
- ⑤ ㉑과 ㉒ 모두에서 영락 11년 3월 11일 이후부터 은의와 동거 여부를 중혼 허용의 기준으로 삼았다.

5. ㉑~㉖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의 논리에 따르면 이성손은 백 씨 사후에 백 씨를 위해 3년간 상복을 입어야 한다.
- ② ㉖의 논리에 따르면 아버지의 적처라도 경우에 따라 어머니로서의 대우에 대한 판단이 달라야 한다.
- ③ ㉑와 ㉒ 중 어느 쪽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백 씨와 이 씨는 모두 적처로 인정된다.
- ④ ㉒과 ㉑ 중 어느 쪽의 논리를 따르는지에 따라 이효손이 이 씨를 위해 상복을 입는 여부가 달라진다.
- ⑤ ㉑와 ㉒ 중 어느 쪽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이효손은 이 씨를 위해 상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

6. 윳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415년(태종 15) 박일룡은 자신의 어머니를 적처로 인정하고 자신을 적자로 인정해달라며 소(訴)를 제기하였다. 그의 아버지 박길동은 이조판서를 지낸 인물로, 1390년(고려 공양왕 2) 상인(商人) 노덕만의 서녀(庶女)인 노 씨를 혼례 없이 들여 박일룡을 낳았다. 이후 박길동은 1395년(태조 4) 현감 김거정의 딸인 김 씨와 혼서를 교환하고 혼례를 거친 후 그 사이에 박일룡을 낳았다. 한편 김 씨와 혼인한 상태에서 1402년 대사헌 허생의 딸인 허 씨와 혼서를 교환하고 혼례를 거친 후 그 사이에 박삼룡을 낳았다. 김 씨는 친정인 창녕에 거주하였으며, 박길동은 허 씨와 한양에서 평생 동거하였다. 박일룡과 박삼룡 모두 어려서, 집안의 큰일은 첫아들인 박일룡이 실질적으로 도맡았다. 1413년 5월 박길동이 죽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박일룡이 소를 제기한 것이 었다.

- ① 박길동 사망 직후에 소가 제기되어 그 해에 판결되었다면, 작첩과 수신전은 김 씨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 ② 박길동이 소가 제기될 당시까지 생존해 있었다고 해도 중혼에 대해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 ③ 박일룡이 집안의 일을 주관하는 아들이라는 점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 ④ 이 소송에서 작첩과 수신전은 은의나 동거 여부를 따져 허 씨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 ⑤ 이 소송에서는 세 명의 처를 둔 경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결이 내려졌을 것이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조의 비(妃) 인열왕후가 낳은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요, 효종이 둘째 아들이다. 적자(嫡子)로서 종통(宗統)을 잇는 맏아들이 장자(長子)이니 효종은 차자여서 차장자(次長子)라고들 한다. 장자였던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자, 인조는 중자(衆子) 가운데 어진 이를 택하고자 효종을 세자로 세웠으니, 그 신성함과 자식을 알아보는 밝음은 종묘사직이 억만년 무궁하게 이어갈 터를 이룬 것이다. 그리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 나라가 오늘날 안팎으로 우환이 없고 위아래로 편안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신성한 왕손들이 모위를 계승하여 찬란한 광채가 이처럼 성대할 수 있겠는가.

효종이 세상을 떠나니 당시 대왕대비인 인조의 계비(繼妃) 자의대비는 어머니로서의 상복을 입어야 했다. 이에 논자들은 저마다 주장을 펼치며 치열하게 다투었다. ㉠ 갑설은 “차장자라 함은, 비록 애초에는 장자가 아니었으나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차자가 후사를 이어 장자가 됨으로써 그 명칭이 붙은 것이니, 삼년복(三年服)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 을설은 “차장자가 중자라는 사실은 어쩔 수 없으니, 비록 장자가 죽어 차자가 후사를 이은 것이라 해도 원래 장자가 아니므로, 중자의 기년복(朞年服)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하나의 설을 같이하면서 특별히 복제에서만 두 설로 갈라져 시끄러이 다투며 서로 끊임없이 배치 하니 ㉢ 내 생각으로는 사뭇 괴이하다.

복(服)을 올리고 내리고가 어찌 중통에 영향이 있겠는가. 효종은 인조의 차자로서 적통을 이어 만백성에 군림하고 온 세대에 종통을 드리웠으니, 효종을 인조의 장자라 한다고 해서 어찌 선왕의 빛을 더하겠으며, 효종을 인조의 중자라 한다고 해서 또 어찌 선왕의 덕이 바래겠는가. 지금은 그저 효종이 인조의 차자라는 이유로 이렇듯 어지러이 다투는 결론 없는 분쟁이 있는 것이다. 이미 대통(大統)을 이었으면 둘째 아들인지 넷째나 다섯째 아들인지는 전혀 구별할 것 없는 일이다.

옛날 한(漢)의 문제(文帝)는 궁 밖에서 미양궁으로 들어가 제위(帝位)를 받았다. 이때 스스로가 “짐은 황제의 측실에서 난 아들이다.”라고 말하였고, 가의(賈誼)가 문제에게 “참여시킬 만한 측실의 인맥이 있지 않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 당시에는 위에서도 스스로 서자(庶子)였던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아래에서도 임금을 위해 숨기려 하지 않았다. 하물며 문제는 그 후사가 수십 대에 이어졌고 당 태종처럼 지금까지도 성군으로 칭송되는데, 누가 그런 것을 문제 삼는가. 더욱이 우리 효종과 인조는 주(周)의 ㉣ 무왕과 문왕에 비견되는데, 무왕이 문왕의 장자가 아니라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안다. 그리하여 후세 사람들은, 문왕은 자식을 가리는 밝음이 있고 무왕은 뜻을 잇는 효가 있어서 주나라 팔백 년을 여는 대업을 이루고 대통을 전하였다고 여긴다. 이런 일은 무왕과 달리 적자였던 백읍고가 이었으면 못 했을 것이라고 모두가 한결 같이 말한다. 광명이 빛나고 만세를 비추는 이 사실은 어인 일이란 말인가.

무왕이 봉어하고 그 어머니인 태사가 아직 살아 있다고 가정할 때 무왕을 위해 상복을 꼭 3년 입었는지 2년도 안 입었음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무왕을 깎아 먹겠으며 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빛을 더하겠는가. 당시에 종통이 불명하다는 따위의 이야기가 있었을까. 똑똑한 사람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무릇 인조가 효종에게 물려주고 효종이 인조를 이은

것은 충분히 주나라 무왕과 문왕의 경우와 같으니, 복제가 오르고 내려거나 가볍고 무겁거나 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겠는가. 차장자도 장자라는 이름이 붙으니 올려서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주장이고, 차장자도 중자일 수밖에 없으니 내려서 1년의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주장이다. 고례(古禮)에도 그에 관한 정문(正文)이 없어서 주석들도 같고 다름이 있으니, 한때의 예(禮)는 실성을 참작하여 정하면 된다. 삽설을 따라노을설을 적용해도 되는 것이다.

복을 올리고 내리고가 종통이 밝아지고 않고에 관계된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왕대비가 기년복을 입어도 효종은 결국 인조의 종통을 이은 것이고, 대왕대비가 삼년복을 입어도 효종은 역시 결국 인조의 종통을 이은 것이기 때문이다. 종통이 여기에 있는데 어디로 가겠는가. 위로 삼백 년의 터전을 이어받고 아래로 몇천 년의 토대를 전할 명철한 일대 중흥 군주로 우뚝 섰으며 종묘가 인정하고 자손이 지키는데도, 복을 올리고 내리는 것을 가지고 종통이 밝아지지 않는다고 간주하려는가. 그러니 오늘날 전례(典禮)를 다투면서 종통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어질지 못하다. 그것은 또한 흥분하여 일부러 빌려 온 주장이다. 그것은 또한 공격을 위해 꾸어 온 명분이다. 그 마음이야말로 위태롭고 위험하다.

- 박세당, 「예송변」 -

1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장자가 아니면서 종통을 계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찬반이 갈린다.
- ② 전해 오는 예법에 규정된 차장자 관련 복제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다.
- ③ 장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어머니의 상복은 삼년복이라는 데 대해 다툼이 있다.
- ④ 측실 소생이라는 사실은 황제로서의 종통 승계에 흠이 되는 요소라서 가려야 한다.
- ⑤ 대왕대비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죽으면 종통에 상관없이 1년 이상 상복을 입어야 한다.

20. ㉠의 사례를 인용한 글쓴이의 의도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국왕이 된 이상 장자의 지위는 자연스럽게 따라붙게 된다는 원리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 ② 무왕의 어머니인 태사의 복제를 따짐으로써 효종의 어머니가 입을 상복의 종류를 결정한다.
- ③ 효종을 주의 문왕에 견증으로써 효종이 저자가 되어 적법하게 종통을 계승하였다는 것을 밝힌다.
- ④ 인조가 밝은 덕으로 보위를 튼튼히 하고 후대에 이어가도록 한 것을 강조하여 종통의 본질을 환기한다.
- ⑤ 차장자로서 종묘사직의 기초를 닦은 중국의 실례를 들어 국가의 종통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지향을 드러낸다.

21. 윗글과 비교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집안의 적자 가운데 첫째 아들로서 종통을 이어받을 사람만을 장자라 하는 것은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부모가 삼년복을 입는 것은 종통을 잇는 뜻을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종통을 계승할 자격을 잃거나 중자 중에서 종통을 잇도록 정한 경우에는, 이들이 죽었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는 삼년복을 입지 않습니다. 왕가에서는 서자라도 세자로 책봉되면 임금이 될 때까지는 장자와 같이 대우해야 마땅합니다. 고례에서 말하는 장자란 종통을 계승하지 못한 경우에 따져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대통을 계승하는 보위에 올랐다면, 그때에도 여전히 어머니가 있다고 하여 그저 아들일 뿐 임금이 아니라고야 할 수 있겠습니까.

- ① 효종에 대한 상복은 종통 승계를 우선하는 원칙으로 결정해야 하고 그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은 나라 안 모든 질서에서 일관된다고 보는 점에서는 ㉠과 일치한다.
- ② 효종은 중자로서 세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바뀔 수 없는 것이라서 어찌해도 장자일 수 없다고 보는 점에서는 ㉠과 일치한다.
- ③ 임금이 된 효종에 대해서는 장자인지를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점에서는 ㉠과 일치한다.
- ④ 세자 시절의 효종이 장자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는 ㉠과 일치하고, 장자는 첫째 아들이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는 ㉠과 일치한다.
- ⑤ 효종이 적실의 소생이 아니라면 차장자라 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점에서는 ㉠, ㉡, ㉢과 일치한다.

◆ 06 MDEET 언어추론 5~7번

[5~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광종께서는 빼어난 품모와 영특한 자질을 가져 태조의 치우친 사랑을 받았습니다. 친히 정종의 유명(遺命)을 받아 왕위를 형제 간에 계승하여 왕자의 화미(華美)함을 전했습니다. 예(禮)는 아랫 사람을 접함에 도맡고 관찰력은 사람을 아는 데 실수가 없었으며, 근친 왕족에게 아부하지 않고 항상 호강(豪強)한 자들을 억눌렀습니다. 소원하고 미천한 자를 버리지 않고 홀아비나 과부에게 혜택이 빛나니, 즉위한 해로부터 8년에 이르기까지 정치와 교화가 맑고 공평하며 형벌과 은상(恩賞)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쌍기(雙冀)가 등용된 이래로 임금께서는 문사(文士)를 받들고 중히 여겨 은혜로운 예(禮)가 지나치게 풍성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문사들이 적재(適才)가 아닌데도 분에 넘치게 진출하였고 차례를 뛰어 승진하였으며, 심지어는 한 해를 채우지 않고 고관이 되기조차 했습니다. 임금께서 밤마다 이들을 불러 접견하고 날마다 태도를 부드럽게 하여 즐기니, 군국(軍國)의 중요한 임무가 막혀서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酒食)과 연유(讌遊)가 잇달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남북의 용렬(庸劣)한 자들이 기대 오기를 원하나, 그 지혜와 재주는 논하지 않고 모두 특별한 은혜와 예절로 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후생(後生)이 다투어 진출하고 구덕(舊德)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중국의 풍속을 소중히 한다 하면서도 좋은 제도는 취하지 않았고, 중국의 선비를 예우한다 하면서도 어진 인재는 얻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피땀 어린 재물을 더욱 짜내었지만 오히려 사망에서는 헛된 명예만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시는 정사를 걱정하며 힘쓰지 않고 빈료(賓僚)를 접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깊어 가고 군신의 의논이 날로 막혀 마침내 감히 시정(時政)의 득실을 말하는 자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불교를 깊이 믿고 과중하게 여겨, 상시로 치르는 행사가 이미 많은데도 따로 기원하여 향불을 피우고 불법을 닦음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과 장수를 구하여 기원할 뿐이었고 한정된 재력을 다 써서 무한한 인연을 지으려 했습니다. 스스로 지존의 자리를 가버리 여기고 작은 공덕 짓기를 좋아하였습니다. 또 출입과 연유에 사치를 극도로 하였으나, 그 눈앞에 큰 일이 없음을 법력이 그렇게 해 준 것이라 하여 스스로 하는 바를 바르게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궁실은 법도를 넘었고, 의복과 음식은 진귀하고 고운 것을 사용했으며, 토목 사업은 때를 가리지 않았고, 공예품의 제작은 설 날이 없었으니, 대략 계산해도 보통 때 1년의 경비가 족히 태조 때 10년의 경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말년에 이르러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 만약 광종께서 처음처럼 공검(恭儉)과 절용(節用)을 생각하고 정사에 부지런하였다면 어찌 그 녹(祿)과 수명이 겨우 향년 50으로 그쳤겠습니까? 그 끝마침을 처음과 같이 하지 못했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경신년부터 을해년 사이에는 간악한 자들이 다투어 나아와 참소와 중상이 크게 일어나니, 군자는 용납되지 못하고 소인이 그 뜻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노비가 그 주인을 논하기에 이르렀으니, 상하의 마음이 서로 헤어지고 군신이 한 몸 같이 되지 못했으며, 구신(舊臣)과 숙장(宿將)이 잇달아 살해되고 그들의 골육과 인척이 또한 다 도륙되었습니다.

게다가 혜종께서 형제를 아끼고 정종께서 국가를 잘 보전한 것은 은의(恩義)로 논한다면 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두 임금이

모두 외아들이 있을 뿐이었는데 또한 그 생명을 보전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비단 그 덕을 갚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시 원한을 깊이 맺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년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외아들에게조차 의혹과 시기하는 마음을 내었으므로, 경종께서 동궁에 계실 때 매일 불안해하다가 요행히 그 왕위를 잇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어찌하여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고 일찍부터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깊이 통탄할 일입니다.

- 고려사 최승로전 -

5. 광종대의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쌍기의 등용 후부터 경신년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 ② 광종은 즉위 8년까지는 검소하게 생활하였고, 처벌과 포상도 적절하게 시행하였다.
- ③ 광종에게 억압받았던 세력이 쌍기의 등용 후 '문사', '후생'으로 일컬어지는 부류로 등장하였다.
- ④ 현실을 호도하는 무리가 있었으며, 이들로 인해 광종의 마음이 정사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 ⑤ '구신', '숙장'으로 일컬어지던 부류의 사람들은 지혜와 재주를 갖추었으나 점차 이를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6. 위 글에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글쓴이가 광종에게 대책을 제시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사의 관직 제수에 원칙을 세워 외침에 대비토록 하십시오.
- ② 불교를 신앙 생활에 국한하고 현실적 통치 이념을 바르게 세우십시오.
- ③ 주인이 노비를 함부로 형벌에 처하는 것을 금하여 노비의 처우를 개선하십시오.
- ④ 대대로 부를 축적한 호강한 이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국고를 충실히 하십시오.
- ⑤ 중국의 제도보다 우리의 고유한 풍속과 문물을 소중히 하여 시대 상황에 맞게 활용하십시오.

7. 글쓴이가 광종을 평가하는 데 고려한 요소를 찾을 수 없는 진술은?

- ① 학문을 닦지 않고서 좋은 정치를 베풀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 ② 신료들이 불만을 품지 않게 하고 백성들에게 선악의 잣대를 보여 주는 데는 상벌을 공평히 하는 것만 한 것이 없다.
- ③ 밝은 임금은 측근의 신하가 왕명에 순종만 하는 것과,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선비가 물려나 자취를 감추는 것을 두려워한다.
- ④ 올바른 정치는 목수가 재목을 그 성질에 맞게 제자리에 올려놓아 큰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가려 쓰는 데서 출발한다.
- ⑤ 백성들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 위협할 수 없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꾀로써 속일 수도 없으니, 그들의 마음을 열어 복종케 하려면 인정(仁政)을 베풀어야 한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예전에 당(唐) 태종이 방현령에게 이르기를 “선대(先代)의 사관(史官)이 기록한 것을 임금에게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방현령이 대답하기를 “사관은 거짓으로 칭찬하지 않으며 나쁜 점을 숨기지 않으니, 임금이 이를 보면 반드시 노하게 될 것이므로 감히 임금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방현령에게 명하여 순서대로 편찬하여 올리게 했습니다. 방현령은 선대의 실록을 편찬하여 올렸지만, 말에 은근히 숨긴 것이 많았습니다. 어질고 슬기로운 태종으로서 마땅히 바른대로 쓰여 있더라도 싫어할 점이 없었을 것인데, 방현령 같은 일세의 현명한 재상도 오히려 사실을 숨기고 피하여 감히 바른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혹시 태종에게 ㉠ 미치지도 못하는 후세의 군주가 자기 시대의 역사를 보고자 한다면, 아첨하는 신하가 어찌 방현령처럼 사실을 숨기고 피하는 것에 그치겠습니까?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하시는 일마다 삼대(三代)*를 본받으시면서도, 근래에 특별히 명령을 내려서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보고자 하시니, 저희들이 명령을 듣고는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당 태종도 그 시대의 역사를 보고 후세의 비난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태종이 덕망을 잃은 일이니 어찌 전하께서 마땅히 본받을 일 이겠습니까?

을해년에 전하께서 이를 열람하고자 하셨다가 그 명을 거두셨으니, 한 시대의 법을 세움이 엄격하셨고 만세의 공론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러한 명령이 있게 되니,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 그 옳고 그름을 보고서 교훈으로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 거짓인지 참인지를 살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진하게 기록되었는지 조사해 그것을 빠짐없이 쓰도록 하시려는 것입니까?

(중략)

삼가 생각하옵건대, 창엽한 군주는 자손들의 모범입니다. 전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열람하시면 대를 이은 임금이 이를 구실로 삼아 반드시, “우리 아버님께서 하신 일이며 우리 할아버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면서 다시 서로 이어받아 당연한 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관이 감히 사실대로 기록하는 뜻을 잡겠습니까? 사관이 사실대로 기록하는 필법이 없어서 아름다운 일과 나쁜 일을 보여서 권장하고 경계하는 뜻이 어둡게 된다면, 한 시대의 임금과 신하가 무엇을 꺼리고 두려워해서 자신을 반성하겠습니까? 오늘날 역사를 열람하는 일은 자손들에게 좋은 계책을 전해 주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 『태조실록』 -

* 삼대: 고대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23. <보기>의 ㉠~㉢ 중,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보 기>—

을해년(태조 4년), ㉠ 태조는 당 태종의 고사를 들어 즉위 이후의 ㉡ 역사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을 내렸다. 신하들이 반대하자 태조는 ㉢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그 후 태조는 ㉣ 또다시 역사 기록을 보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 신하들이 또 반대했지만, 태조는 기어이 제출하게 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4. 위 글의 글쓴이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언급해 결단을 촉구한다.
② 역사적 인물의 잘못된 선례를 들어 경각심을 일깨운다.
③ 시대의 변화를 상기시켜 그 흐름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
④ 상대방의 특별한 지위를 부각시켜 사안의 중대성을 환기한다.
⑤ 상대방의 지난 행위의 긍정적인 면을 높이 평가하며 일관성을 요구한다.

25. ㉡, ㉢은 임금이 역사 기록을 보려는 이유를 글쓴이가 추정한 것이다. ㉡, ㉢에 대한 글쓴이의 반론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 기>—

- ㄱ. 역사를 기록한 당사자와 역사에 서술된 대상자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ㄴ. 사관은 소문이나 억측, 터무니없는 일을 기록하여 후세의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ㄷ. 왕실과 조정, 중앙과 지방의 크고 작은 많은 사건을 가리지 않고 거두어 모아 기록했습니다.
ㄹ. 옛날의 성현이 남긴 기록만 보더라도 치란(治亂)·홍망의 자취를 돌아보고 반성하기에 충분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ㄱ | ㄴ | ② | ㄱ | ㄷ |
| ③ | ㄷ | ㄹ | ④ | ㄹ | ㄴ |
| ⑤ | ㄹ | ㄷ | | | |

26.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그녀의 숨씨는 아직 어머니 숨씨에 미치지 못했다.
②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쳤다.
③ 백성들의 원성이 왕에게까지 미치지 못했다.
④ 광고는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⑤ 산업 시설에도 황사 피해가 미쳤다.

◆ 10 LEET 언어이해 30~32번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태조께서 건국하고 즉위한 지 34일 만에 신하들을 접견하고 개연히 탄식하기를 “근래 백성을 혹독하게 수탈하여 1경(頃)당 받는 조(租)가 6석(石)에 이르러 백성이 살 수가 없으니 내가 매우 불쌍히 여긴다. 이제부터는 마땅히 10분의 1을 받는 제도를 써서 밭 1부(負)에 조 3승(升)을 내게 하라.” 하고 마침내 백성에게 3년간의 조를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당시는 삼국이 대치하여 있고 군웅이 각축하던 때여서 제정이 급박했으나 우리 태조께서는 전쟁은 뒤로 하고 백성 구제를 우선하였으니, 곧 천지가 만물을 생장 육성하는 마음이요, 요·순·문왕·무왕의 인정(仁政)과 같은 것입니다. 삼국이 통일되자 곧 전제(田制)를 정하여 신민(臣民)에게 수조지(收租地)를 나누어 주었는데, 백관은 그 품(品)에 따라 주어서 본인이 죽으면 그 권리를 회수하고, 부(府)의 군사는 20세가 되면 분급 받고 60세가 되면 돌려 바치게 하였습니다. 또 사대부로서 토지를 받은 자가 죄를 범하면 그것을 회수하니, 사람마다 자중하여 감히 법을 범하지 못하여 예의가 흥하고 풍속이 아름다워졌습니다. 부(府)·위(衛)의 군인들과 주·군·진·역의 아전은 각각 그 땅의 소출을 먹고 그 땅에 정착하여 생업을 편안히 하니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비록 천하를 호시탐탐 노리는

요와 금이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으나 감히 침노하여 덤비지 못한 것은, 태조께서 삼국의 땅을 나누어 신민들과 그 부(富)를 함께 누리고 그 생업을 후하게 하며 그 마음을 결속시켜 국가 천만 대의 근본이 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한인(閑人)이니 공음(功蔭)이니 투화니 입진이니 가급이니 보급이니 등과니 별사니 하는 명칭이 대(代)마다 증가하여 토지를 관장하는 관리들이 변채함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 땅 주고 땅 거두는 법이 점점 무너져 해이하게 되었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가 틈을 타서 속이고 숨기는 것이 끝이 없어서 이미 벼슬한 자나 시집간 자도 오히려 한인전을 받아먹고 군대에 가지 않은 자도 속여서 군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비가 그 분급 받은 땅을 몰래 가지고 있다가 사사로이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식은 몰래 땅을 가로채어 나라에 돌려주지 아니하여 이미 역분전(役分田)을 받았는데도 또 한인전을 받으며, 다시금 군전을 받고 있습니다. (중략)

토지 송사에 휘말린 자가 옥에 가득하고 뜰에 가득한 실정이어서 농민은 농사를 제쳐두고 판결을 기다립니다. 두어 달 밀린 문건이 산같이 쌓이고 1묘(畝)의 다툼이 수십 년간 계속되어 지방 수령은 침식을 잊고 판결하여도 끝이 없으니 이것은 사전(私田)이 쟁의의 발단이 되어 송사가 번잡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1묘의 토지를 요구하였다가 뜻대로 되지 못하면 오히려 원한을 품고 길가는 사람 보듯 하며, 심한 자는 상복을 벗자마자 땅문서가 어디 있는지 대라고 부모를 모시던 노비를 매로 때립니다. 부모에 대하여도 이러한데 하물며 형제간이야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사전 때문에 인륜이 금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조정에 있는 사대부들이 걸으로는 서로 좋게 지내는 체하나 속으로는 서로 시기하며 암암리에 증상하기까지 하니 이것은 사전이 옳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년에는 결병이 더욱 심하여 간악하고 흉한 도당들이 여러 주와 군에 걸쳐 땅을 차지하고 산천으로 경계를 삼고서 모두 그 땅이 자기의 조업전(祖業田)이라고 핑계하면서 서로 훔치고 서로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묘의 주인이 5, 6명을 넘으며 1년의 도조가 8, 9번을 넘을 지경입니다. (중략)

원전대 태조께서 지극히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었던 법을 준수하고 후세 사람들이 사사로이 주고받아 결병하는 폐단을 고쳐, 사(士)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국역을 지는 자도 아니면 땅을 주지 말며 죽을 때까지 사사로이 주고받지 못하도록 엄격한 한계를 세우소서. 백성과 함께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국가 재용을 족하게 하고 백성을 후하게 하며 조정의 관원들을 우대하고 군사들에게 충분한 공급을 하도록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나라가 부유하게 되고 군사가 강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예의와 엄치의 기풍이 일어나고 인륜이 밝아지고 소송 사건이 없어질 것입니다.

- 『고려사』, 조준의 상서 -

30. 글쓴이의 입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 토지 문제를 해결하여 풍속을 바로잡아야 한다.
- ㉡ 역분전을 받고서 또 한인전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 ㉢ 지방 수령으로 하여금 땅 송사에만 매달리게 해서는 안 된다.
- ㉣ 백성이 소유한 땅을 거두어 새롭게 토지를 재분배해야 한다.
- ㉤ 부자간에도 분급 받은 땅을 사사로이 주고받게 해서는 안 된다.

31. ㉠에 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조업전에 적용한 원칙이었다.
 ㄴ. 관인이나 군인 등 직역을 담당한 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ㄷ. 국가가 토지를 공적으로 관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ㄹ. 수조권자(收租權者)의 중복을 방지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2. <보기>는 위 글 이후의 상황이다. 위 글과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보 기>

도평의사사에서 전제를 논의하였다. 이때 전제가 크게 문란하여 겸병하는 권세가들이 토지를 빼앗아 산과 들을 차지할 정도였다. 그 폐해가 날로 깊어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다. 이성계가 대사헌 조준과 더불어 사전을 개혁하고자 하였는데, 이색이 옛 법을 경솔하게 고쳐서는 안 된다 하며 그 의론을 고집하여 따르지 않았고, 이림·우현보·변안열도 모두 개혁하려 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색을 유종(儒宗)으로 여기고 그 말을 빌려 여러 사람의 귀를 현혹시켰다. 그래서 사전을 개혁하려는 의론이 결정되지 못하였다. 예문관제학 정도전과 대사성 윤소종은 조준의 의론에 찬동하고, 후덕부윤 권근과 판내부시사 류백유는 이색의 의론에 찬동하였는데, 찬성사 정몽주는 둘 사이에서 중립적이었다. 이에 왕은 각 부서로 하여금 사전 개혁의 장단점을 논의케 하였다. 논의한 자 53명 중에 개혁에 찬성하는 자가 18, 19명이요, 나머지는 모두 반대하였는데, 개혁하지 않으려는 자는 모두 대궐집의 자제였다.

- 『고려사절요』 -

- ① 왕은 이색의 의견을 좇아 조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② 개혁의 찬성파나 반대파 모두 옛 제도나 관습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③ 사전 개혁에 대해 기득권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조정 관료들이 많았다.
 ④ 조준의 상서를 계기로 사전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조정에서 본격화되었다.
 ⑤ 윤소종 또한 토지 제도 문란의 원인을 국가의 통제력을 벗어난 사전에서 찾았다.

[23~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가에서 마땅히 한 집안의 살림을 적당히 측량하여 농토 몇 부(負)를 한정하여 한 집의 영업전(永業田)으로 만들어 주되, 당(唐)나라의 조세 제도처럼 해서 농토가 많은 사람의 것도 빼앗지 않고 모자라는 사람에게도 더 주지 아니하며, 돈이 있어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백 결(百結), 천 결(千結)이라도 모두 허락하고, 농토가 많아서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영업전 몇 부를 제외하고는 역시 허락하며, 많아도 팔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강제로 팔도록 하지 말고, 모자라도 살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독촉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영업전 몇 부 내에서 사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소재지에서 사실을 밝혀, 산 사람은 남의 영업전을 빼앗았다는 죄로 다스리고 판 사람 역시 몰래 판 죄로 다스리되, 산 사람에게는 값은 관계없이 되돌려주게 하고, 판 사람에게는 스스로 관부에 나가서 고하여 죄를 용서받고 자기 농토를 되돌려 받도록 한다.

무릇 농토를 사고 파는 것은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관부에 보고한 뒤에 매매하도록 하고, 관부에서는 전적(田籍)을 상고한 뒤에 문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도록 하며, 도장이 찍히지 않은 문서는 소송도 받아 주지 않으면, 비록 빨리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아도 두고두고 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한 마을을 보니, 작년에 몇 가호(家戶)가 파산하였고, 금년에도 몇 가호가 파산하였다. 파산한 자들은 처음에는 많았던 농토가 점차 적어지더니, 나중에는 적은 농토마저 잃게 되었다. 이미 농토가 없어졌으니, 어찌 파산하지 않겠는가?

비록 이 사람의 것을 빼앗아 저 사람에게 주지는 못하더라도, 가난한 백성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토를 항상 보존하여 세업(世業)의 물건으로 삼을 수 있도록 백성의 가산을 제정해 준다면, 그것이 어찌 다소나마 유익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무릇 농토를 파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한 백성들일 것이다. 지금 간사하고 교활한 아전과 부호한 상인들이 천만 금의 재물을 벌면 하루아침에 가난한 백성들의 농토를 전부 매수하여 소봉(素封)*의 낙을 누리는 바, 현재 파산하는 자들이 많은 뿐만 아니라, 그 해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가난한 백성으로 하여금 농토를 팔지 못하도록 하면 파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병(兼併)하는 자도 감소될 것이다. 가난한 백성이 혹 지혜와 능력이 있어 농토를 사게 되면 한 자의 땅을 사든, 한 치의 땅을 사든 사들이기는 해도 파는 일은 없으므로 쉽게 부흥하게 되며, 부유한 백성은 농토가 비록 많으나 혹은 자손들이 많아 나누어 소유하거나, 우매한 자손이 가산을 탕진하여 불과 몇 대 만에 평민들과 동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점차로 ㉡균전(均田制度)이 완성될 것이다.

가난한 집은 당장에 재산이 없어지는 걱정이 없을 것이니, 참으로 기뻐할 것이고, 부유한 가정은 비록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영업전만은 남아 있을 것이니, 부유한 사람으로서 후일을 염려하는 자 역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행하기가 쉬우며 효과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균전의 대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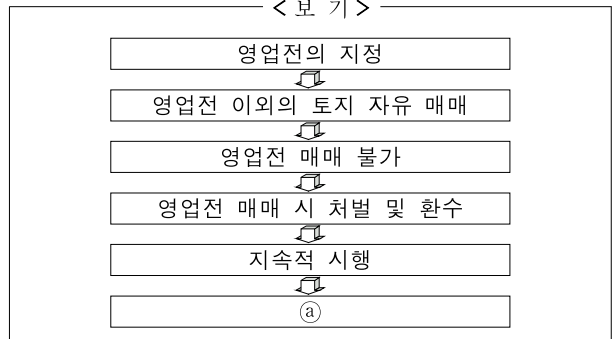
-이익, 논균전(論均田)-

*소봉(素封) : 영토는 없어도 제후와 비등한 수입이 있는 부자

23.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농토가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 ② 토지 매매 때문에 피해를 보는 백성들이 많았다.
- ③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 현상이 나타났다.
- ④ 부(富)를 축적한 상인들이 많은 농토를 구매하였다.
- ⑤ 토지 매매는 매수자의 거주 지역으로 제한되었다.

24. <보기>는 균전 제도에 대한 글쓴이의 사고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계층간의 위화감 해소
- ② 토지의 균등한 분배 실현
- ③ 충분한 국가 재정의 확보
- ④ 문란한 사회 질서의 회복
- ⑤ 백성의 안정적 삶의 터전 마련

25. 윗글을 읽은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의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어떤 절차로 토지 매매를 하게 할 것인가?
- ② 당나라가 시행한 조세 제도란 어떤 것인가?
- ③ 균전 제도는 부유한 백성에게도 이득이 되는가?
- ④ 영업전 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⑤ 한 집에서 소유할 영업전의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인가?

26. 윗글의 내용으로 볼 때, ㉠'결병' : ㉡'균전'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 | |
|-------------|------------|
| ① 목재 : 집 | ② 기차 : 여행 |
| ③ 가뭄 : 저수지 | ④ 비둘기 : 평화 |
| ⑤ 수험생 : 합격자 | |

27. 글쓴이가 주장한 ‘균전 제도(均田制度)’와 그 취지가 유사한 것은?

- ① 투명한 금융 거래를 위한 금융실명제
- ②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한 주 5일 근무제
- ③ 국제 유가와 환율의 변동을 반영하는 유가연동제
- ④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기 위한 의무교육제
- 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

◆ 10 MDEET 언어추론 5~7번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왕이 홍화문에 나아가 대소 신료와 유생 및 서민들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태평하다고 하였다. 지금 나라의 근본이 과연 튼튼하다고 이를 수 있는가? 백성들이 편하다고 이를 수 있는가? 양민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임금이 되어 구제해 주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백성의 어버이라 하겠는가? 과인이 즉위한 지 30년이 되는 동안 익히 그 ㉠ 폐단을 알면서도 손을 쓰지 못한 것이 어찌 백성을 소홀히 여겨서였겠는가? 법을 고침에는 반드시 폐단이 따르게 되고, 또 오래된 법만 못하게 되기가 쉽기 때문이었다.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대책을 강구하게 했더니, 제시된 안의 하나는 가호를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호포(戶布)요, 하나는 전답에 세금을 매겨 거두는 결포(結布)이다. 결포는 징수가 간편할 것 같기는 하나, 세를 더 없는 인상을 준다. 이에 호포를 거두는 것으로 하되, 시행은 호포를 호전(戶錢)으로 바꾸어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둘은 근원이 하나이니, 남부하기 편한 쪽을 택하려는 것이다. 너희들은 각자 소회를 다 말하라.”

또 유생들을 불러 특별히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유생에게 호전을 부과하는 것을 불가하다 하지만, 위로 삼공(三公)에서부터 아래로 선비와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부역은 고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너희들 처지에서 백성을 볼 때에는 구별이 있을지 모르나, 과인이 볼 때에는 모두 나의 적자(赤子)이니, 어찌 애증이 다를 수 있겠는가? 내가 만일 왕이 되지 않고 사저에 있었다면, 나 역시 호전을 내야 하는 것이다. 한집에서 노비나 주인이 똑같이 호전을 내는 것은 명분을 문란케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호가 있으면 역(役)이 있는 것이 상례이다. 또 양민은 오래도록 고역에 시달려 왔기에 부역을 고르게 하고자 한다. 과인이 이미 군포 한 필을 감하겠노라고 말을 하였으니, 어떻게 약속을 지키지 않겠는가?”

이에 유생 이봉령이 아뢰었다.

“호포와 결포가 모두 ㉡ 폐단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역질이 돌고 있으니 성상께서는 의당 애처로운 마음으로 더 돌보아야 하실 터인데, 도리어 온 백성을 전에 없던 새로운 역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성상의 뜻은 비록 백골징포를 없애려 하시지만 차후의 폐단은 자못 더 심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규은 역시 “호전의 폐단은 앞으로 양인의 군역보다 더 심할 것이니, ㉢ 작은 폐단을 고치려다 ㉣ 큰 폐단을 낳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 하였고, 정양원도 “호전은 심히 불편합니다. 여러 궁가(宮家)에서 받는 경비를 억제하고 쓸데없는 잡비를 없애며 하릴없이 포를 축내는 군관(軍官)을 도태시키고 토지 대장에 빠져 있는 전답을 찾아내는 것이 변통의 대책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이서는 “송의 청묘법은 천하에 돈을 뿌렸다가 일시에 거두어들였기 때문에 돈 가치가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였는데, 이번의 호전은 그 폐단이 청묘법보다 더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며, 다른 유생들도 일제히 호전은 시행할 것이 못 된다고 아뢰었다.

왕이 인근 방(坊)에 사는 서민들에게 들어와서 소회를 말하라고 하시니, 호전이 편하다고 하는 자가 많았다.

왕이 다시 신료들을 부르셨다.

이보혁이 “호전이든 결포든 모두 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축되는 배의 수량은 어염세 등의 수입으로 충당하면 됩니다.”라고

하였고, 김상적은 “호전은 행할 수 없으니, 결전(結錢)으로 바꾸어 주소서.”라고 하였다. 조명리와 김선행, 김문행 등도 같은 내용으로 아뢰었으나, 유독 사간 윤광찬만은 내수사(內需司)를 혁파할 것을 청하였다.

왕이 말씀하시기를, “윤광찬이 내수사의 혁파를 청하였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라마는 난처한 바가 있다.”라고 하니, 우의정 정우량이 “사간의 소청을 대신은 마땅히 시행하자고 청해야 하겠으나, 내수사가 없어지면 거기에 소속되었던 사람 역시 갈 곳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다른 구멍을 뚫을 염려가 있으니, 이 점이 민망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사관(史官)은 평한다. “임금이 쥔문에 임하여 ㉤ 폐단을 바로잡을 대책을 널리 물었으나, 신하들 가운데 누구도 묘책을 내어 걱정을 덜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오직 윤광찬만이 내탕(內帑)의 혁파를 청하였다. 내탕은 대궐의 사사로온 비용을 맡은 곳이다. 이렇듯 크게 변동할 때를 당하여 해당 관청에 맡겨 그리 시행하게 했다면 성덕의 사심 없음을 보일 수 있었을 텐데, 대신이라는 자가 혁파를 청하기는커녕 도리어 소속된 자들의 돌아갈 곳 없음을 말하였다. 대신이 이러하니 어떻게 나라 일을 도모하겠는가? 군역이란 동쪽에서 쪼개서 서쪽에 보태 주는 것인데, 근본은 버리고 끝만 취하여 경장(更張)의 이름만 있고 실속이 없어 돌아서기도 전에 폐단이 매우 컸으니, 슬픈 일이다.”

5. 위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왕은 양반에게도 호전을 물리는 사안과 관련하여 서민에게까지 직접 의견을 묻는다.
- ② 신료들 가운데 일부는 호별 징세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지만, 그에 반대하는 자도 많다.
- ③ 서민들은 군포를 부담하지 않으리라는 기대 속에 호전제 시행에 찬성하는 자가 많다.
- ④ 유생들은 호전제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신분 질서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 ⑤ 사관은 내수사 혁파를 통해 왕실에서 먼저 자기희생을 보여 주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6. 호전제에 반대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대안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동전 대신 현물 화폐인 포로 거두자.
- ② 토지를 다시 조사하여 세수를 늘리자.
- ③ 노비에게도 역을 지워 포를 거두도록 하자.
- ④ 어염세를 줄여 백성이 세금을 덜 내도록 하자.
- ⑤ 청묘법을 고쳐서 시행하여 백성의 세금 부담을 줄이자.

7.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은 기존의 폐단으로, 지칭하는 내용은 ㉢과 같다.
- ② ㉡이 지칭하는 내용 속에는 ㉢과 ㉣이 모두 포괄된다.
- ③ ㉢은 토지에 세금이 집중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의미한다.
- ④ ㉣은 군역의 부과가 고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을 뜻한다.
- ⑤ ㉤은 향후 발생할 폐단으로, 지칭하는 내용은 ㉢과 같다.

◆ 09 LEET 언어이해 14~16번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라는 민(民)을 근본으로 삼고 민은 재물로써 살아가니, 애민(愛民)하는 요체는 마땅히 절용(節用)을 앞세워야 하고 절용하는 실속은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소비를 줄이지 않고 쓰는 것을 절약하지 않는다면 곤궁함에서 회생시켜 그 생계를 후하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국토의 절반이 산과 계곡이고 인구는 적은데 유식(遊食)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생산할 자원이 풍부하지 않으니 재물을 더욱 절약해서 사용해야 할 것인데, 검소를 숭상하는 교화(教化)가 거친 명주옷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사치를 경쟁하는 풍습이 갈수록 민간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대부들 사이에 의복과 음식의 제도가 옛날에는 없던 것이 지금은 있는 것이 있는데 옛날 것은 검소했으나 지금 것은 사치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로부터 풍속이 날로 사치로 치닫고 재용(財用)이 날로 부화(浮華)함에 빠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재물이 모두 소민(小民)들의 고혈(膏血)에서 나오는 것이니 백성들이 어찌 빈궁하고 곤란하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말세에 풍습이 변화된 데 따른 것일 뿐 아니라 군상(君上)께서 영도(領導)하여 통솔하시는

방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이 근심하고 있는 것은 곧 국가의 경비입니다. 숙종조(肅宗朝) 초년에는 한 해 국가의 용도를 통틀어도 8, 9만에 불과했는데 말년에 이르면서는 갑절이 되었고 영조조(英祖朝) 초년에는 이미 숙종조 말년의 액수를 넘어섰다가 근년에 이르면 또 갑절이 되었으며 전하께서 즉위하셨을 때는 영조조 말년보다도 더 많아졌습니다. 작년에는 산릉(山陵) 조성 공사가 크게 일어나고 객사(客使)의 영송(迎送)이 빈번했기에 상례(常例)와 비교할 수 없지만, 숙종 초년과 비교할 때 몇 곱절이 됩니다. 조종(祖宗) 이래 수백 년 동안 해마다 그 땅 그대로이고 해마다 그 백성 그대로이어서 땅도 더 열리지 않았고 가호(家戶)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세(賦稅) 수입은 줄기만 하고 늘지 않았으며 경비 지출은 늘기만 하고 줄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홍수나 가뭄 등 재해와 전쟁으로 인한 의외의 지출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이 공부(貢賦)를 맡은 사람이 논한 것을 듣건대 한 해의 수입으로 반년의 용도를 지탱하지 못하고, 근근이 살림살이를 이끌며 겨우 눈앞의 일만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관서(關西) 지방의 소미(小米)와 다른 관사(官司)에 남아 있던 저축 덕분이었습니다. 항아리에 담아 둔 물은 모두 우물 속의 물이고 잔에 따라 놓은 술은 모두 병 속의 술인 것이기에, 우물이 마르면 항아리가 비게 되고 병이 기울어지면 잔이 마르게 될까 두렵습니다.

신이 이미 여러 차례 영해(嶺海)에서 천적(遷謫)을 겪으면서 백성들의 곤궁과 절고를 익히 목도했습니다. 매양 보면 땀속까지 어는 추위에도 끼임을 옷이 없고 창자가 주리어도 먹을 것이 없으며 집을 울타리로 가리지도 못하고 거적자리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구실을 재촉하는 엄명은 성화보다도 다급하고 채찍의 고통이 살과 뼈에 닿치니, 때 없이 옮겨 다니고 오래지 않아 죽게 되며, 남아 있는 사람은 떠나간 사람들이 내지 않은 구실까지 물어야 하고 살아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의 구실까지 담당해야 하는데도 대궐 문은 멀기만 하여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담아 두었던 것을 모조리 털어 겨우 세납(稅納)에 충당하니 항아리와 단지가 모두 깨져 이미 그해를 넘길 거리가 없게 됩니다.

설령 나라에서 날마다 쓰는 비용이 조금 여유가 있더라도 오히려 조금씩 거두어들인 것을 흠이나 모래 쓰듯이 하는 것은 마땅치 않거늘, 하물며 지금 나라 회계의 곤란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고 소민(小民)들의 곤궁과 고통이 이와 같은 때이겠습니까? 안으로는 궁금(宮禁)과 밖으로는 관부들의 남용을 개혁하되,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억제하고 옛적에 3년이 되면 한 해의 것이 남도록 저축하던 일을 법으로 삼는다면, 사치하는 풍습이 고쳐지고 용도를 절약한 효과로 백성들이 곤궁에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선왕조실록』, 정조 1년 대사헌 정창순의 상소문 -

14. 글쓴이가 파악하고 있는 당시 시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국가의 재정 수입이 지출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② 잦은 천재지변으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 있다.
- ③ 지배층 사이에 새로운 유행이 퍼지고 있다.
- ④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 ⑤ 경작지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15.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글쓴이가 제안했을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사치 풍속을 금하는 교서(敎書)를 내리소서.
- ② 어사를 파견하여 백성의 처지를 살피소서.
- ③ 확보된 재정으로 국가사업을 일으키소서.
- ④ 왕실과 관부의 지나친 지출을 금하소서.
- ⑤ 국고(國庫)의 곡식 비축량을 늘리소서.

16. <보기>의 필자가 위 글을 비판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우리나라는 검소함 때문에 쇠약해졌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구슬을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 산호 같은 보석이 없다. 또 금이나 은을 가지고 가게에 가도 떡조차 살 수 없는 형편이다. 이것이 정말 검소한 풍속 때문일까? 아니다. 이것은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용할 줄 모르니 생산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백성들이 나날이 궁핍해지는 것이다. 재물이란 우물의 물과 같다. 퍼내면 차게 마련이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 버린다. 그렇듯이 비단을 입지 않기 때문에 나라 안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고, 그릇이 찌그러져도 개의치 않으며 정교한 기구를 애써 만들려 하지 않으니, 기술자나 질그릇 굽는 사람들이 없어져 각종 기술이 전해지지 않는다. 심지어 농업도 황폐해져 농사짓는 방법을 잊어버렸고, 장사를 해도 이익이 없어 생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사민(四民)이 모두 가난하니 서로가 도울 길이 없다. 나라 안에 있는 보물도 이용하지 않아서 외국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는 실정이다. 그러니 남들이 부강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가난해지는 것이다.

- ① 상업이 발달해야 경제가 성장하는 법인데 농산물의 지역 간 유통을 억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 ② 주변 국가와의 경제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데 지방 재정의 곤란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잘못이다.
- ③ 백성의 궁핍은 국부(國富)가 국외로 유출된 탓인데 농업 기술의 퇴보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 ④ 소비 증가가 생산 증대로 이어지는 법인데 허비를 줄인다면 자칫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잘못이다.
- ⑤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백성들 간의 상호 부조(扶助)를 장려해야 하는데 국가가 성급하게 개입하는 것은 잘못이다.

[23~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하사(下士)*는 오곡을 보면 중국에도 있는지를 묻고, 중사(中士)*는 중국 문장이 우리 나라보다 못하다고 여긴다. 상사(上士)*는 중국에는 이학(理學)이 없다 한다. 과연 그러하다면 중국에는 배울 만한 것이 거의 없다 하겠다.

그러나 이 큰 천하에 무엇인들 없겠는가? 내가 지나가 본 곳은 중국의 한 모퉁이인 유주(幽州), 연주(燕州)이고, 만난 사람도 문인 몇 사람일 뿐이니 도(道)를 물려받은 큰 선비는 실상 보지 못했다. 하지만 ㉠ 반드시 그런 사람이 없다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은 천하의 서적을 다 읽지 못했고 천하의 지역을 두루 돌아보지 못한 때문이다. 지금 중국에는 뛰어난 학자들과 걸출한 문인들이 있는데도 우리 나라 사람들은 중국의 학문과 문학을 볼 것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얼 믿고 그러는지 알 수 없다.

대저 서적에 기재된 것은 그 범위가 대단히 넓고 의미가 무궁하다. 그런 까닭에 중국 서적을 읽지 않는 자는 스스로 금을 굶는 것이고, 중국을 다 오랑개라 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다. 중국에 비록 육상산이나 왕양명 같은 사람들의 학설이 있다고 해도 주자학의 전통(嫡統)은 제대로 남아 있다.

우리 나라는 사람마다 주자의 학설을 말할 뿐이며 나라 안에 이단이 없으므로 사대부는 감히 육상산이나 왕양명의 학설을 말하지 못한다. 이것이 어찌 도가 하나에서 나와서 그런 것이겠는가? 과거(科擧)로 몰아대고 풍기(風氣)로 구속하니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몸이 편안하지 않고 그 자손마저 보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것이 중국의 큰 규모와 같게 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무릇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예를 다 발휘해도 중국의 물건 하나에 불과할 터이니 서로 비교하려는 것은 이미 자신을 알지 못함이 심한 자이다.

내가 연경(燕京)에서 돌아오니 국내 사람들이 잇달아 와서 중국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청하는 것이었다. 나는 일어나면서, “그대는 중국 비단을 못 보았나? 꽃과 새, 용 따위의 무늬가 번쩍번쩍하여 살아 있는 듯하며, 가까이 보면 기뻐하는 듯, 슬퍼하는 듯, 모습이 금세 달라진다.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직조 기술이 과연 여기까지 이를 줄은 몰랐다 하는바, 우리 나라의 면포가 날과 씨만으로 짜여 있는 것과 어떠한가? 중국에는 어떤 물건이든지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 그 말은 문자를 그대로 사용하며, 집은 금빛과 채색 단장으로 꾸몄고, 통행하는 것은 수레이고,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뿐이다. 그 도읍, 성곽, 음악의 변화함이며, 무지개다리, 푸른 숲 속에 은은하게 오가는 풍경은 완전히 그림과 같다. 부인네 머리 모습과 긴 저고리는 모두 옛날 제도 그대로이며 멀리서 바라보면 몸매가 날씬하여 우리 나라 부인네의 짧은 저고리와 폭넓은 치마가 아직도 몽고 제도를 이어받은 것과 같지 않다.”

하였더니 모두 허황하게 여겨 믿지 않았다.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아주 다르다는 듯이 이상한 표정을 짓고 돌아가면서, “호국(胡國)을 우단(右袒)**한다.”라는 것이었다.

아아, 나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모두가 장차 이 유도(儒道)를 밝히고 이 백성을 다스릴 사람들인데 그 고루함이 이와 같으니 오늘날 우리 나라 풍속이 진흥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주자는 “의리를 아는 사람이 많기를 원할 뿐이다.” 하였는데, 그러므로 나도 이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을 수 없다.

- 박제가, 북학의 -

* 하사·중사·상사: 선비를 상·중·하로 나누어 표현한 것.

** 우단: 한쪽 편을 들.

23. 윗글의 필자가 당시 우리 나라 사정에 대해 지적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 나라 여자들의 복식은 중국의 복식과는 다르다.
- ② 과거 시험에서 왕양명의 학설을 주장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 ③ 많은 사람들은 근거 없이 중국의 문화가 저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지식인들이 현재의 연경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를 갖고 있지 않다.
- ㉠ 우리 나라의 면직물은 무늬 없이 짜기 때문에 중국 비단에 미치지 못한다.

24. ㉠과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 ① 조물주의 존재 여부와 같은 신념의 문제는 사실의 진위와는 관계없다.
- ② 유럽의 백조가 희다고 해서 전 세계의 백조가 희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 ③ 소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고 해서 소의 다리가 다섯 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이곳에서 키가 큰 사람이라고 하여 저곳에서도 키가 크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 ⑤ 바닷물이 짠지 짜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 모든 바닷물을 다 마셔 볼 필요는 없다.

25. <보기>의 견해를 가진 사람이 윗글의 필자에게 충고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점]

<보 기>

지금까지 우리는 위인들이 남긴 업적을 숭배하고 따르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들의 행동을 우리 행동의 모범으로 미화하게 되어, 주체적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사실 위인이 위인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룩한 업적이 탁월해서라기보다는,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고 갈등과 역경을 극복한 과정이 비범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인의 삶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권위에 도전했는지,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역경을 극복했는지를 배워야 한다.

- ① 중국을 따르는 일이 역사적 과제를 깨닫고 중국을 따르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 ② 중국을 배운다면 문물이나 제도를 배우기보다 중국이 스스로 변혁해 온 경로와 그 의지를 배워야 한다.
- ③ 중국에도 결함이 있으므로 중국의 문물을 따를 때에는 장점을 선택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 ④ 중국 문물을 잘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 받을 충격과 혼란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⑤ 중국은 하나의 참조 대상일 뿐이므로, 우리는 중국과는 다른 우리의 장점을 발전시켜야 한다.

26. 필자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택한 글쓰기 전략은?

- ① 은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우리의 후진성을 풍자한다.
- ② 반대 상황을 설정하여 도덕적 인재의 등용을 촉구한다.
- ③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이용하여 지식인의 속물근성을 비판한다.
- ④ 경험적 사례를 제시하여 사람들의 통념이 편협한 것임을 드러낸다.
- ⑤ 성현의 말씀을 인용하여 훌륭한 옛 제도를 현대에 시행할 방법을 제시한다.

27. 대상에 대한 태도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분을 바른 듯이 하얀 얼굴, 기름 바른 머리, 여름에도 까만 지팡이와 같이 밤낮 팔에 걸고 다니는 외투, 속에도 없는 것을 지어서 하는 듯한 그 공손한 태도와 웃음.
- ② 고대 그리스 조각같이 매끈한 얼굴 윤곽, 그 밑으로 살짝 다 물어도 선명하게 선이 지는 입매, 언제나 투명하고 파르스름해 보이는 그의 살결, 그 초연함. 그는 속눈썹마저 길었다.
- ③ 자신이 가진, 백 명 중 한 명꼴에 해당하는 아름다움을 소모하지 못해 늘 전전긍긍해 하는 여자였다. 화장과 옷맵시에 유달리 감각이 뛰어났던 그녀는 액자에 끼워 놓고 봐야 안성맞춤인 그런 여자였다.
- ④ 민주의 모습은 아득하게 사막의 흰 햇빛 속에 녹아들고 불에 패인 보조개로만 남는다. 그 보조개는 구름이 되기도 하고, 이슬이 되기도 하고, 안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줄기 바람이 되어 옷섶을 시리게 파고든다.
- ⑤ 루바슈카도 아니고 터키 사람들의 옷도 아닌 참으로 기묘한 디자인의 옷을 그는 걸치고 있었다. 녹색과 갈색의 대담한 체크무늬의 옷은 이상하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컸던지 움직이면 사람이 아니라 옷이 움직이고 있는 형편이었다.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다.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 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의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그가 쓴 『북학의』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였다. 중화 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A]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북학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백여 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덕무는 『입연기』를 저술하면서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청 문물의 효용을 ㉡ 도외시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 스스로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즉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나)

18세기 후반의 중국은 명대 이래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의 정기 시장부터 인구 100만의 대도시의 시장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사치품에 ㉢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 물건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 기관의 확대는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대외 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은 중국의 경제적 변영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었다. 은의 유입, 그리고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상품 경제의 발전을 ㉔ 자극하였다. 은과 상품의 세계적 순환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그러나 청의 변영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에 접어들 무렵 부터는 심각한 내외의 위기에 직면해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된다. 북학파들이 연행을 했던 18세기 후반에도 이미 위기의 징후 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㉕ 성행하였다. 이런 결사 조직은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곤 했고 위기 상황에서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인맥에 기초한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 역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다. 교육받은 지식인 들이 늘어났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 되어 있었고, 경쟁의 심화가 종종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되었다.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 청의 화려한 변영의 그늘에는 ㉖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

통치자들도 변영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조정에는 외국 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확대에 인해 이런 경향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18세기 후반에 청 조정은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위기가 본격화되지는 않았고,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사회 변화의 부정적 측면을 염려 하거나 개혁 방안을 모색하였다.

1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 ③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④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현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17. (가)의 ‘박제가’와 ‘이덕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제가는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방도라고 간주하였다.
- ② 박제가는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 이라고 생각하였다.
- ③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 ④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청이 중화를 보존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 ⑤ 박제가와 이덕무는 모두 중화 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18. [평등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 ②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 태도이다.
- ③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 ④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 지어 파악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 ⑤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19. 문맥을 고려할 때 ㉑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로운 작물의 보급 증가가 경제적 변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② 신용 기관이 확대되고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③ 반란의 위험성 증가 등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④ 이주나 농경 집약화 등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⑤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 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20. <보기>는 (가)에 제시된 『북학의』의 일부이다. [A]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비판적 읽기를 수행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이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 ...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다.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다. 그래서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 재상조차도 직접 읍복사 앞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 ... 우리나라는 해마다 은 수만 냥을 연경에 실어 보내 약재와 비단을 사 오는 반면,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 저들의 은으로 바뀌 오는 일은 없다. 은이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지만, 약은 사람에게 먹여 반나절이면 사라져 버리고 비단은 시신을 감싸서 묻으면 반년 만에 썩어 없어진다.

- ①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 ② <보기>에 제시된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은 [A]에서 제시한 북학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볼 수 있어.
- ③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서술은 (나)에 제시된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 ④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변영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평가라 볼 수 있어.
- ⑤ <보기>에 제시된 중국의 관료에 대한 묘사는 (나)에 제시된 관료 사회의 모습을 참고할 때,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라 볼 수 있어.

2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드러난
- ② ㉡: 생각하지
- ③ ㉢: 그치지
- ④ ㉣: 따라갔다
- ⑤ ㉤: 일어났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類書)는 고급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다.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와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으며, 편찬 방식은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았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국가 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A] 위엄을 과시할 수 있었다.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한 이후, 조선에서는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하였다.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고,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은데,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기록하여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유서 편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세기부터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면서 유서 편찬에 변화가 나타났다. ㉡ 실학자들의 유서는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고, 편찬 의도를 지식의 제공과 확산에 두었다. 또한 단순 정리를 넘어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하고 평가를 더하는 등 저술의 성격을 드러냈다. 독서와 견문을 통해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집적했고,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과 이에 대한 의견 등 ‘안설’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주자학의 지식을 ㉢ 이어받는 한편,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다. 광범위하게 정리한 지식을 식자층이 ㉣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하여 박물학과 자연 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가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추진한 것은 지식의 역사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나)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학문, 곧 서학은 조선 후기 유서(類書)의 지적 자원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 가운데 이수광, 이익, 이규경 등이 편찬한 백과전서식 유서는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7세기의 이수광은 주자학뿐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주자학에 기초하여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전에 관한 학문 등이 주류였던 당시 상황에서, 그는 『지봉유설』을 통해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화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을 뿐 아니라 사신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 이에 대해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을뿐더러 주자학이 아닌 것이 ㉤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는 ㉬ 일부 주자학자의 비판이 있었지만, 그가 소개한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주변에 알려졌다.

18세기의 이익은 서학 지식 자체를 ㉭ 『성호사설』의 표제로 삼았고,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며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하였다.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지식의 범주를 ㉮ 바꾸어 수용하였다. 또한 서학의 수학을 주자학의 지식 영역 안에서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19세기의 이규경도 ㉯ 『오주연문장전산고』를 편찬하면서 서학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는 『성호사설』의 분류 체계를 적용하였고 이익과 마찬가지로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그가 주로 유서의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은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의 학문과 절충한 것이었고,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규경은 이 책들에 담긴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받아들였고,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의 중화 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서학 수용의 이질감과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렇듯 이규경은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활용해 매개적 방식으로 서학을 수용하였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유서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나)는 유서의 분류 기준과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 ② (가)는 유서의 개념과 유용성을 소개하였고, (나)는 국가별 유서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였다.
- ③ (가)는 유서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검토하였고, (나)는 유서 편찬자들 간의 견해 차이를 분석하였다.
- ④ (가)는 유서의 특성과 의의를 설명하였고, (나)는 유서 편찬에서 특정 학문의 수용 양상을 시기별로 소개하였다.
- ⑤ (가)는 유서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을 분석하였고, (나)는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유서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5.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에서 편찬자가 이상인 유서가 많았던 것은 편찬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 ② 조선에서는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유서가 편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 ③ 조선에서는 중국의 편찬 방식을 따르면서도 대체로 국가보다는 개인에 의해 유서가 편찬되었다.
- ④ 중국에서는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대규모로 편찬한 유서를 통해 왕조의 위엄을 드러내었다.
- ⑤ 중국에서는 주로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여 유서를 편찬하였다.

6.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 ㉢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식의 제공이라는 ㉠의 편찬 의도는, ㉡에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한 것에서 나타난다.
- ②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한 ㉠의 방식은, ㉡에서 해부학과 생리학을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수용한 것에서 나타난다.
- ③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 ㉠의 성격은, ㉢에서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한 것에서 나타난다.
- ④ 사실 탐구를 중시하며 자연 과학에 대해 드러낸 ㉠의 관심은, ㉢에서 천문학과 우주론의 내용을 수록한 것에서 나타난다.
- ⑤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의 유연성과 개방성은, ㉡과 ㉢에서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받아들인 것에서 나타난다.

7. ㉣를 반박하기 위한 '이수광'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문에서 의리를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하는 것보다 중한 것이 없으니, 심성을 수양하는 것은 그다음의 일이다.
- ② 주자학에 매몰되어 세상의 여러 이치를 연구하지 않는 것은 널리 배우고 익히는 앞의 바른 방법이 아닐 것이다.
- ③ 주자의 가르침이 쇠퇴하게 되면 주자학이 아닌 학문이 날로 번성하게 되니, 주자의 도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 ④ 유학 경전에서 쓰이지 않은 글자를 한 글자라도 더하는 일을 용납하는 것은 바른 학문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다.
- ⑤ 참되게 알고 참되게 행하는 것이 어려우니, 우리 학문의 여러 경전으로부터 널리 배우고 면밀히 익혀야 할 것이다.

8. (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의 『임원경제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는 19세기까지의 조선과 중국 서적들에서 향촌 관련 부분을 발췌, 분류하고 고증한 유서이다.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의식을 명시한 이 유서에는 향촌 사대부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렸고, 향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집성되었다. 주자학을 기반으로 실증과 실용의 자세를 견지했던 서유구의 입장, 서학 중국 원류설,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이 반영되었다. 안설을 부기했으며, 제한적으로 색인을 넣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①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던 (가)의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의식이 확인되었군.
- ② 증거를 제시하여 이론적으로 밝히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가)의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편찬자의 고증과 의견이 반영된 것이 확인되었군.
- ③ 당대 지식을 망라하고 서양 관련 지식을 소개하고자 한 (나)의 『지봉유설』에 비해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편찬되는 전문 유서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겠군.
- ④ 기존 학설의 정당화 내지 배제에 관심을 두었던 (나)의 『성호사설』에 비해 향촌 사회 구성원의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겠군.
- ⑤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이던 (나)의 『오주연문장전산고』와 달리 중화 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중국의 현실과 조선의 현실을 비교한 내용이 확인되었군.

9.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거(依據)하여
- ② ㉡: 계몽(啓蒙)하는
- ③ ㉢: 용이(容易)하게
- ④ ㉣: 혼재(混在)되어
- ⑤ ㉤: 변경(變更)하여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세기 초부터 ㉔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西學)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㉕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국의(西國醫)』라는 글에서 아담 샬이 쓴 『주제군정(主制群徵)』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㉖ 제시하였다. 『주제군정』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들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㉗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心主知覺說)을 고수하였다.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흠슨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태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전체신론(全體新論)』 등 흠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 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체를 ‘신기(神氣)’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흠슨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최한기는 『전체신론』에 ㉘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흠슨의 뇌주지각설(腦主知覺說)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 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신론』의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의학을 ㉙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6.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㉑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을 서양과 대조하여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㉒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를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 ㉓ 인체관과 관련된 유학자들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열거하여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
- ㉔ 우리나라 근대의 인체관 가운데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㉕ 동양과 서양의 지식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체관을 정립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한기는 흄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 ② 아담 샬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였다.
- ③ 이익과 흄슨은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 ④ 아담 샬과 흄슨은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
- ⑤ 『주제군징』과 『전체신론』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18.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에서 서양 학문을 정책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이다.
- ② 전래된 서양 의학이 내용 면에서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 ③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 ④ 서양 해부학이 조선의 윤리 의식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 ⑤ 서양 의학이 천문 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보기>는 인체에 관한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에 제시된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심장은 오장(五臟)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
- ㄴ.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 ㄷ.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 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 ㄹ. 신기는 대소(大小)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0. 윗글의 '최한기'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양 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 ①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
- ②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군.
- ③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
- ④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 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는 않겠군.
- ⑤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

2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들어오기
- ② ㉡: 드러내었다
- ③ ㉢: 퍼뜨리기
- ④ ㉣: 실린
- ⑤ ㉤: 가리지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이다.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져야 했다. 천인은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賤役)을 담당했다.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이 16세기 이후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법적, 사회적 신분제는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로 같은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신분제에 변화가 일어났다. 천인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노비는 속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다. 영조 연간에 편찬된 법전인 『속대전』에서는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값을 100냥으로 정하는 규정을 둬으로써 속량을 제도화했다. 이는 국가의 재정 운영상 노비제의 유지보다 그들을 양인 납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해 주는 길을 선택했다.

18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에서는 ‘유학(幼學)’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유학은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儒生)을 지칭했으나, 이 시기에는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직역 명칭으로 ㉠ 굳어졌다. 호적상 유학은 군역 면제라는 특권이 있어서 상민층이 원하는 직역이었다.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그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에의 편입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일부 상민층은 유학 직역을 발판으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반의 하한선과 비(非)양반층의 상한선이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양반들이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은 더 강하게 작동했다. 유학의 증가는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보여 준다.

* 직역: 신분에 따라 정해진 의무로서의 역할.

(나)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주의가 일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반 이외의 신분에서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17세기의 유형원은 『반계수록』을 통해, 19세기의 정약용은 『경세유표』 등을 통해 각각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 일련의 개혁론을 제시했다.

유형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 국가의 건설이었다. 신분 세습을 비판한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하는 것이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민(四民)으로 편성하고자 했다. 그는 과거제 대신 공거제를 통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하여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한 후,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여 관료로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면 향촌 사회의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약용은 신분제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사민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농공상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 구역 개편을 구상했다. 이에 맞춰 사(士) 집단을 재편하고자 했다.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 관료인 '선사'를 선발하고 일정한 교육을 한 후,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관료를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 사 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했지만, 농민과 상공인에선 선사의 선발 인원을 배정하는 등 노비 이외에서 사 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비제에 대해서는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모두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사에 주목했다. 유형원은 다스리는 자인 사와 다스림을 받는 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천하의 이치라고 보고 ㉡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 정약용도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며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또한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 집단에 정치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 했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사회 지배층의 재구성성을 통해 도덕 국가 체제를 추구했다.

12.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속대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속량된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 ② 『경국대전』 반포 이후 갑오개혁까지 조선의 법적 신분제에는 두 개의 신분이 존재했다.
- ③ 조선 후기 양반 중에는 노비를 양인 신분으로 풀어 주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이들이 있었다.
- ④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은 『경국대전』의 신분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 ⑤ 조선 후기에 상민이 '유학'의 직역을 얻었을 때, 양반의 특권을 일부 가지게 되지만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13. [일련의 개혁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형원은 자신이 구상한 공동체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직업군을 없애는 방안을 구상했다.
- ② 유형원은 지방 사회의 도덕적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관료 선발 인원을 지방에도 할당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 ③ 정약용은 지배층인 사 집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 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 ④ 정약용은 직업별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 구역 개편 방안을 구상했다.
- ⑤ 유형원과 정약용은 모두 시험으로 도덕적 능력이 우수한 이를 선발하여 교육한 후 관료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경제적 영향으로 신분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분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양반층의 노력이고, ㉡은 이러한 양반층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다.
- ② ㉠은 호적상 유학 직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반 집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율적 노력이고, ㉡은 기존의 양반들이 가진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 ③ ㉠은 상민층이 유학 직역을 얻는 것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억제하는 장치이고, ㉡은 능력주의를 통해 인재 등용에 신분의 벽을 두지 않으려는 방안이다.
- ④ ㉠은 능력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신분 구분을 강화하여 불평등을 심화하는 제도이고, ㉡은 사회 지배층의 인원을 늘려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한 방안이다.
- ⑤ ㉡은 양반층의 특권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분적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고, ㉢은 양반과 비양반층의 신분적 구분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다.

15. (나)를 바탕으로 다음의 ㄱ~ㄴ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ㄱ. 아래로 농공상이 힘써 일하고, 위로 사(士)가 효도하고 공경하니, 이는 나라의 기풍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다.
 ㄴ. 사농공상 누구나 인의(仁義)를 실천한다면 비록 농부의 자식이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ㄷ. 덕행으로 인재를 판정하면 천하가 다투어 이에 힘쓸 것이니, 나라 안의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될 기회가 열릴 것이다.
 ㄹ.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엄연하니,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상하의 위계가 분명해지고 나라가 편안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 ① 유형원은 ㄱ과 ㄴ에 동의하겠군.
- ② 유형원은 ㄴ과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③ 유형원은 ㄴ에 동의하지 않고, ㄷ에 동의하겠군.
- ④ 정약용은 ㄴ과 ㄷ에 동의하겠군.
- ⑤ 정약용은 ㄱ에 동의하고,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16.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6세기 초 영국의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가상 국가를 통해 당대 사회를 비판했다. 그가 제시한 유토피아에서는 현실 국가와 달리 모두가 일을 하고, 사치에 필요한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6시간만 일해도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노동을 면제받는 ‘학자 계급’이 존재한다. 성직자, 관료 등의 권력층은 이 학자 계급에서만 나오도록 하였는데, 학자 계급은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한다. 학자 계급은 능력 있는 이를 성직자가 추천하고, 대표들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자 계급도 성과가 부족하면 ‘노동 계급’으로 환원될 수 있고, 노동 계급도 공부에 진전이 있으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될 수 있다.

- ① 유토피아에서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선발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가)의 ‘유학’보다 (나)의 ‘선사’에 가깝다.
- ② 유토피아에서 관료는 노동을 면제받지만 그 특권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에서 차별적 특혜를 받던 16세기 이후의 ‘양반’과는 다르다.
- ③ 유토피아에서 ‘학자 계급’에서만 권력층이 나오도록 한 것은, (나)에서 우월한 집단인 ‘사 집단’에 정치권력을 집중시키고자 한 유형원, 정약용의 생각과 유사하다.
- ④ 유토피아에서 ‘노동 계급’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되는 것은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추천받는다라는 점에서, (가)의 상민 출신인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다르다.
- ⑤ 유토피아에서 ‘노동 계급’과 ‘학자 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계급 간 차등이 없음을 전제하므로, (나)에서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한 유형원, 정약용의 구상과는 다르다.

17. ㉓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관용이 우리 집의 가훈으로 확고하게 굳어졌다.
- ② 어젯밤 적당하게 내린 비로 대지가 더욱 굳어졌다.
- ③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어머니의 격려로 굳어졌다.
- ④ 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몸이 추위로 굳어졌다.
- ⑤ 갑작스러운 소식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 11 LEET 언어이해 27~29번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종 24년 9월 예조 판서 성현이 글로 아뢰기를,
“근일의 전지(傳旨)에, ‘관상감·사역원·전의감·혜민서는 본래 사족(士族)이 아니니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에 넣지 말고 내의원만 넣어라.’ 하셨습니다.

하오나 신은 천문, 지리, 복서(卜筮), 의약, 통역 등 일체의 잡학(雜學)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므로 그중에서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잡학을 문반의 직임으로 삼고 잡과 과거 제도까지 설치한 것은 그 임무를 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종께서는 문교(文敎)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잡학에도 뜻을 두셨기 때문에 당시 인재가 많이 나왔으며, 혹 그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발탁하여 등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잡학으로 이름이 있는 자는 모두 이미 늙어서

[A] 장차 채용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방의 한미한 무리로서 문관이나 무관의 벼슬을 얻지 못한 자가 다만 삼사(三司)에 소속되어 이름을 걸어 놓고 그 읍덕이 자손에게 끼쳐지기를 바라고 있을 뿐인데, 논밭과 하인도 없이 오랫동안 서울에 머물고 있어서 고생이 막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잡학의 부류라고 논하여 정한다면 비록 참서관이라 하더라도 혹 논핵을 당할 경우 법관이 바로 잡아다가 문초할 것이고, 직위가 3품에 오른 자도 읍덕이 자손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사람들이 다 흠어져 버릴 것이니, 누가 즐기어 소속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더욱이 내의원과는 업무상 차이가 없으니 어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예전 그대로 두소서.

신이 분수에 넘치게 성상의 은혜를 입어 예관(禮官)으로 있으니, 말은 바 문교와 잡학의 일에 생각한 바가 있어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기에 권장할 만한 방도를 다음에 조목으로 진술하겠습니다.

1. 잡학 중에서 역어(譯語)가 더욱 정밀하지 못하여 매매할 때 쓰는 일상어도 능히 통달하지 못하니, 하물며 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에 전하는 말이 어긋나지 않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근년에 제조(提調)들은 거의 다 그 말을 알지 못하여 취재(取才)하여 선발할 때 그 무리에게 말기므로 인정을 쓰고 사사로움을 따르는 폐단이 없지 않으니, 어찌 국가에서 법을 만든 뜻이겠습니까? 금후 제조는 한어(漢語)를 해득한 자로 임명하소서.

1. 역관을 취재할 때 경서와 역사서를 강론하는데 먼저 깊은 뜻을 물으면서도 한어의 음과 뜻은 묻지 아니하고, 『노걸대』, 『박통사』 등의 책은 다만 외우게만 하고 그 뜻을 묻지 아니하니, 심히 불가합니다. 금후는 사서(四書)와 경서와 역사서는 한어로 음을 읽은 뒤에 주소(註疏)의 깊은 뜻을 묻고, 『노걸대』 등의 책은 외우게 한 뒤에 반복해서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1. 왜학과 여진학을 취재함에 있어서는 다만 글자만 쓰게 하므로, 과거를 보는 자는 한갓 글자 확만 익히며 제조는 다만 글자 확만 참고하고 말의 음은 전혀 묻지 아니하니, 합격자는 말 한마디도 알지 못하고 국록을 받게 되므로 조정을 기만함이 심합니다. 금후로는 『노걸대』, 『박통사』를 그 말로 번역하게 하고, 취재

할 때에는 음을 묻는 것과 글자 쓰는 것을 겸해서 한다면 두 가지를 온전하게 해서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1. 『역어지남(譯語指南)』은 다만 물건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그 자세한 것은 다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니, 날마다 쓰는 보통 말도 또한 다 분류해서 첨가해야 할 것입니다. 왜어와 여진어도 한어 처럼 ‘지남(指南)’을 만들어서 처음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익히게 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관상감 등의 관원을 문관과 무관의 예로 논하는 것이 타당하나 아니하냐를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전의감과 혜민서는 질병을 다스리고, 관상감은 천문을 살피고, 사역원은 한어를 전하고, 율학(律學)과 산학(算學) 또한 모두 빼놓을 수 없는 임무입니다. 이 때문에 조종조로부터 중히 여겨 문반과 무반에 넣었는데, 지금은 다 그렇지 아니하고 단지 내의원과 내시부 등만 문관과 무관의 반열에 참여하니, 이것이 잡학인이 통분해 하는 까닭입니다.” 하고,

허중은 의논하기를,

“잡학인이 문관과 무관의 반열에 참여한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지금 만일 잡학직이라고 논하면 누가 즐겨 입속하여 그 직무를 힘써 익히겠습니까? 이 법은 결코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철건 등은 의논하기를,

“대저 조종의 법은 가볍게 고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이유 없이 잡학직으로 강등하여 옛법을 어지럽히고 인망을 잃는다면 지극히 편하지 않을 것이니, 예전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중략)

전교하기를,

①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

27.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사역원의 현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역관에게는 역사 지식도 중시되었다.
- ② 역관 선발이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 ③ 회화 능력이 뛰어난 역관이 부족하였다.
- ④ 역관 선발 과정에서 실무 능력이 간과되고 있었다.
- ⑤ 외교를 위해 중국어·일본어·여진어 역관을 양성하였다.

28. ㉠과 같은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신하들이 제시한 근거가 아닌 것은?

- ① 잡과 과거 제도 확대의 당위성
- ② 지속적 인재 충원의 필요성
- ③ 전문직 잡학직의 중요성
- ④ 잡학 기관 간의 형평
- ⑤ 조종의 법의 권위

29. 위 글의 [A]와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하늘이 백성을 내시고 이를 나누어 사민(四民)을 삼으셨으니, 사·농·공·상이 각각 자기의 분수가 있습니다. 선비는 여러 가지 일을 다스리고, 농부는 농사에 힘쓰며, 공인은 공예를 맡고, 상인은 물화를 유통시키는 것이니 뒤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관과 의관 등의 잡학인은 나라에 없을 수 없지만, 직임은 각기 분수에 마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반드시 군자와 소인을 같이 거처하게 하고, 귀천을 섞이게 한 연후에야 권장이 되겠습니까? 벼슬과 상은 임금의 영웅을 다루는 방도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성왕(聖王)은 재덕(才德)이 탁월하거나, 혹은 공로가 중대하고, 혹은 다스린 성과가 제일인 자를 발탁한 일은 있어도, 환관과 역관, 의관을 중용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즉시 내리신 명령을 거두시어 잡학인이 청류(清流)에 섞이지 않게 하소서.

- ① [A]와 <보기>는 모두 잡학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 ② [A]와 <보기>는 모두 잡학인에 관련된 과거의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③ [A]와 <보기>는 잡학인의 처우 개선에 대한 견해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
- ④ [A]는 <보기>와 달리, 잡학인의 현실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⑤ <보기>는 [A]와 달리, 직분에 따른 신분제의 불가변성을 주장의 전제로 제시하고 있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개물성무(開物成務)와 화민성속(化民成俗)의 앞 글자를 딴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개항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임오군란 이후,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反)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순보』를 발간했다.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다.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는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고,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에서였다.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뿐 아니라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이후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했고, 유길준은 『서유견문』을 저술하며 개화 개념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 내고자 했다. 이후 간행된 『대한매일신보』 등의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을사늑약 이후,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과학적·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나)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인 때는 아편 전쟁 이후였다.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반세기에

걸쳐 근대화의 추진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지만, 청일 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다.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

옌푸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한 그에게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인과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 파악하고,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입장은 1910년대 후반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천두슈에게 이어졌다.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은 ㉡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 보고,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다.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空想)에 ㉢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 천두슈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제1차 세계 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속했다.

한편,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했던 장편마이는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한 후,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다.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인생관의 문제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했고, 과학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다.

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가): 서양 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다.
- ㉡ (가):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을사늑약 이후에 제기되었다.
- ㉢ (나): 진정한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하였다.
- ㉣ (나): 과학 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 (나): 근대 과학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 가치관에 주목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5.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 있었다.
- ②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국가 진보의 의미를 포함하였다.
- ③ 『한성순보』와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자인 왕을 개화의 실행 주체로 상징하였다.
- ④ 개화의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었다.
- ⑤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제기되었다.

6. (나)의 ‘천두슈’와 ‘장권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 사상은 과학 및 과학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 ② 전통 사상의 폐단은 과학 정신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 체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③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
- ④ 서양의 과학 정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당면한 국가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 ⑤ 국가의 위기는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부재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에, ㉡은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을 둔 신문화의 달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 ② ㉠은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 ③ ㉠은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시급성을, ㉡은 과학의 방법에 영향 받지 않는 사상이나 철학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 ④ ㉠은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종하는 태도를, ㉡은 전쟁의 폐해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 ⑤ ㉠은 과학과 철학이 문명의 두 축을 이루는 학문이라는 견해에, ㉡은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8. (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 마을은 가난했지만 전통문화와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며 이웃 마을들과 조화롭게 살아왔다. 오래전, 정부는 마을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마을 사람들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신들이 발전을 이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 마을의 역량으로 달성할 수 있는 미래상을 지속해서 홍보했다. 이후 마을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경제적 이권을 두고 이웃 마을들과 경쟁하며 갈등하게 되었다. 격화된 경쟁에서 A 마을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만을 우선시했고, 과거에 중시되었던 협력과 나눔의 인생관은 낡은 관념이 되었다. 젊은이들에게 전통 문화는 서양 문화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다.

- ① (가)에서 『한성순보』를 간행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마을을 홍보한 취지와 부합하겠군.
- ② (가)에서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에 내포된 개화의 지향점은 통치 방식의 변화와 관련 있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며 내세운 목표와 다르겠군.
- ③ (가)에서 박은식은 과학과 구별되는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므로, <보기>에서 젊은이들의 자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보겠군.
- ④ (나)에서 옌푸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술과 정신적 자질을 강조했으므로, <보기>에서 마을이 기술의 수용만을 중시하면 마을 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보겠군.
- ⑤ (나)에서 장권마이는 과학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했으므로, <보기>에서 마을이 과거에 중시했던 인생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문제는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겠군.

9.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다행히 비는 그사이에 그쳐 있었다.
- ② 우리 학교는 이번에 16강에 그쳤다.
- ③ 아이 울음이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 ④ 그는 만류에도 말을 그치지 않았다.
- ⑤ 저 사람들은 불평이 그칠 날이 없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10년 전에 금강산을 유람하여 한 달 동안 다니다가 돌아왔다. 바다는 출렁이고 산은 높이 솟아 그 광경은 무어라 말로 형용할 길이 없었다. 유람하는 이들은 줄지어 이어지고 안개와 구름은 무심하였다. 여기저기 신령스런 골짜기와 신비한 전각들, 이런 것들이 마침내 일대 장관으로 다가왔다. 구룡연·만물상·수미봉·옥경대 같은 여러 뛰어난 경치는 금강산에서도 특히 이름난 것이다. 그런데 ㉠경관이 기이하고 그윽한 언덕과 골짜기가 또 있어, 만일 이름을 붙여 널리 전파한다면 명성의 대열에 끼일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모두 ㉡거친 수풀과 우거진 넝쿨 사이에 가려지고 묻혀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생각하건대 사람 또한 이와 같다. 관각(館閣)*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문화를 빛내고, 낭묘(廊廟)**에서 예복을 입고 왕정(王政)을 보좌하여, 육경(六經)의 참뜻이 뭇 백성에게 파급되게 하는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여항의 사람에 이르러서는 기릴 만한 경술(經術)이나 공적은 없지만 ㉢그 언행에 혹 기록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 그 시문에 혹 전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라도 모두 적막한 구석에서 초목처럼 서들어 없어지고 만다. 아아, 슬프도다! 내가 『호산외기(壺山外記)』를 지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친구인 겸산(兼山) 유재건(劉在建)이 나와 뜻이 통하여 여러 사람의 문집 속에서 더듬고 찾아서 이미 전(傳)에 오른 사람 약간 명을 얻었다. 그리고 ㉣전이 없는 사람은 겸산이 직접 전을 지었다. 그리하여 모두 280여 편이 된다. 정성스럽게 책을 만들어 제목을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이라 붙이고 나에게 서문을 요청하였다. 내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겠는가!

나라 수천 리 안에 인물이 번성하니 언행이나 시문으로써 후세에 전할 만한 사람이 어찌 이루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마는 인멸되어 아는 이가 없게 되었다. 겸산은 흥분이 바다 갈아 남의 좋은 점을 즐거워하여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그물질하듯 끌어 모았다. 또한 그 언행이나 시문 외에도 한 가지 기예, 한 가지 재능이라도 있으면 모두 기록하였다. 그 부지런한 뜻이 어찌 헛되었는가?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책을 읽고 감동하고 분발함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니, 어찌 다만 한 사람의 글에 그치겠는가? 세상의 교화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이 뜻은 내가 명산(名山)에서 깨달아서 겸산의 글에 기록하여 두는 바이다. 아아! ㉥숨은 빛을 찾아내어 찬연히 세상에 나오게 하였도다. 사관(史官)이 기록하여 석실(石室)에 보관한 역사 기록 이외에 태평한 시절 교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책에 있으리라.

- 조희룡, 『이향견문록 서(里鄕見聞錄序)』 -

* 관각: 조선 시대에, 홍문관·예문관·규장각을 통틀어 이르던 말.

** 낭묘: 조정의 정무(政務)를 돌보던 궁전(宮殿).

40. 위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역사 기록의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
- ② 당대의 정치 이념을 비판하고 있다.
- ③ 저술의 교화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 ④ '겸산'의 인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여항 사람들의 행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41. ㉠~㉥ 중, 문맥상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42. <보기>를 참고할 때, ㉦에 수록되었을 인물의 심정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은?

—<보 기>—

『이향견문록』은 조선 후기 중인(中人)들의 전기를 모아서 엮은 책이다. 중인은 여항인(閩巷人)이라고도 하였다. 이들은 자기들의 신분이 사대부보다 낮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다. 동시에 그들은 나름대로의 포부를 지니고 있었고, 자신들의 재능에 대한 자긍심도 있었다.

- ① 반중(盤中) 조홍(早紅) 감이 고와도 보이나라
유자(柚子)가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디마는
품어 가 반길 이 없으세 글로 설위하나이다
- ② 어리고 성긴 매화(梅花) 너를 믿지 않았더니
눈 기약(期約)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촉(燭) 잡고 가까이 사랑할 제 암향(暗香)조차 부동(浮動)터라
- ③ 삼동(三冬)에 배웃 입고 암혈(巖穴)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벌늪도 췌 적이 없건마는
서산(西山)에 해 지다 하니 눈물겨워 하노라
- ④ 농암(農巖)에 올라 보니 노안(老眼)이 유명(猶明)이로다
인사(人事)가 변환들 산천(山川)이야 변할까
암전(巖前)에 모수 모구(某水某丘)가 어제 본 듯하여라
- ⑤ 형산(荊山)의 박옥(璞玉) 얻어 세상 사람 보이며 가니
겉이 돌이니 속 알 이 뉘 있으리
두어라 알 인들 없으랴 돌인 듯이 있거라

43. 위 글로 보아 '유재건'과 '나'의 관계를 뜻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지기자우(知己之友) ② 오월동주(吳越同舟)
- ③ 근묵자흑(近墨者黑) ④ 동상이몽(同床異夢)
- ⑤ 순망치한(唇亡齒寒)

◆ 12 LEET 언어이해 4~6번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조선의 관제는 주나라의 육전(六典) 제도를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주현(州縣)의 향리는 조정의 여러 관직을 모범으로 삼아 본뜬 것이다. 이 둘은 비록 그 명칭이 같지 아니하고 지위의 높고 낮음에 차등이 있다 하더라도, 다스리는 일을 나누어 맡는다는 의미에서는 일찍이 서로 다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조정에서 벼슬살이하는 자는 세가 대족(世家大族)에 속하는 무리가 많다. 그들은 내직(內職)을 거쳐 외직(外職)으로 나아가며,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승진하여 나라 전체에 두루 명성을 떨친다. 또 그들이 그러한 지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성취하게 되면, 문필가와 사가(史家)들이 그 업적을 더욱 빛나도록

찬미하여 수백 년이 지나더라도 그 화려한 업적은 잊히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반면에 오로지 주현에서 벼슬살이하는 자는 그 문지(門地)가 변변치 못하고 말은 바 직무가 아주 낮으며 명성도 한 지역을 넘어 떨치지 못한다. 혹 높은 식견과 뛰어난 재주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모두 묻혀 사라져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하니 비록 그 같은 인재를 자랑하여 기록하려고 한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 같은 사실을 나는 심히 한스럽게 생각한다.

본관이 월성(月城)인 사과(司果) 벼슬의 이진흥은 신라와 고려 이래로 이서(吏胥)로서 가문을 일으킨 인물을 널리 고찰하여 「관감록(觀感錄)」 한 편을 지었다. 그리고는 부친 통덕랑(通德郎) 이경번이 지은 「이직명목해(吏職名目解)」 및 「감은시(感恩詩)」·「호장소(戶長疏)」·「향공소(鄉貢疏)」를 그 앞에 합하여, 『연조귀감(緣曹龜鑑)』이라 하였다. 그 글들은 근거가 확실하고 상소의 언사(言辭) 또한 가히 추려 쓸 만한 것이 많으며, 힘써 선함을 권하고 악함을 깨우치는 기록이 연이어져 있어 가히 읽을 만하다. 그러므로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마땅히 향리들만이 거울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건대 사대부 또한 가히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니, 이 또한 아름답지 아니한가. 다만 위아래 오류백 년 사이에 행적이 많이 흩어져 버려 진기한 꽃이나 특이한 나무 같은 뛰어난 인재를 많이 채록할 수 없었으니, 이 또한 문지 때문에 그러된 것이다.

내가 듣기에 옛적에는 사람을 등용할 때 재(才)와 덕(德)으로 써 그 기준을 삼았으며 문지로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하·은·주 3대 이래 모두 이와 같이 하였으니 대개 부열과 여상이 그러한 예이다. 소를 기르던 백리해가 등용되고 노예였던 위청이 발탁된 일은 그것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 사례이다. 하물며 주현에서 벼슬살이하던 사람은 위와 같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서로 차이가 나는 정도만이 아니다. 그런즉 주현에서 벼슬살이하던 사람을 조정에 등용하는 것은 단지 관부의 책임자로 승진시키는 정도이니, 생각건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후세에는 그렇지가 않아서 오로지 문지로서만 사람을 등용하였다. 그러므로 뛰어난고 특이한 능력을 지닌 선비라도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길이 막혀 벼슬할 수가 없으며, 주현에서 벼슬살이하던 사람은 연자방앗간에서 맷돌을 돌리는 당나귀와 같아서 종신토록 벗어날 수가 없다. 선비 또한 이러한 처지 때문에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끝내 낮고 천한 지경에 빠져 버린 자마저 있으니, 오후라 어찌 애석하지 않으랴.

① 무릇 현달하여 명성을 떨치는 것이 이미 저와 같고, 막히어 세상에 파묻혀 버린 것이 또한 이와 같으니, 문지만으로는 죽히 인재를 쓸 수 없음을 알겠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문지가 한미하다 하여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기꺼이 낮고 천한 지경에 빠져 버리는 자는, 어진 사람을 임용하고 능력 있는 이를 쓴다는 내용의 시조차 읽지 않은 자이니, 어찌 옳다고 하겠는가.

진실로 능히 그 천성을 온전히 하며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면, 이 역시 천하의 어질고 귀한 일이다. 관작이나 공로가 어찌 또한 대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옛적의 서기는 천인이었음에도 행실을 닦아 세상에 이름을 떨쳐 진신(縉紳)과 처사(處士)가 그를 존경하고 흠모함이 오래도록 줄어들지 않았다. 황무진은 가리(假吏)

였으나 몸을 닦아 충효에 뛰어나 원주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를 모시는 제사를 지낸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어질고 고귀한 인물인데, 이들이 어찌 관작을 바라서 자신을 존중했겠는가. 이 책 속에 기록된 내용이 이 같은 뜻을 잘 드러냈으니 취하고 버리는 것의 분별이 분명하다고 할 만하다.

사과 이진흥의 후손인 이명구가 이 책을 간행하려고 하면서, 나에게 서문을 써 줄 것을 청해 왔다. 둔하고 거친 내가 어찌 족히 이러한 일을 맡기에 합당하리요마는, 다만 사과 부자가 명(名)을 다스리고 실(實)에 힘썼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을 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이에 서기와 황무진 두 인물의 사례를 들어 그 뜻을 널리 펴려고 한 것이다.

- 이민행, 「연조귀감 서」 -

4. 위 글에서 언급된 ‘연조귀감’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② 여러 가문이 함께 간행했다.
- ③ 여러 시대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 ④ 다양한 형식의 글을 수록하고 있다.
- 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의 행적을 발굴했다.

5. ㉠의 취지로 상소문을 올린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직은 외직에 비하여 특전이 많으니 외직을 거쳐 오르게 해 주소서.
- ② 버림받은 집안의 사람이라도 뛰어난 자는 등용하는 데 구애됨이 없게 하소서.
- ③ 서열도 적자와 같은 뿌리이니 족보를 만들 때 기재상의 차별을 두지 말게 하소서.
- ④ 서북 지방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부세를 많이 내고 있으니 줄여 주소서.
- ⑤ 천민도 상민과 같은 백성이니 상민과 같이 군역을 저서 신민의 의무를 다하게 하소서.

6. ‘향리’에 대한 글쓴이의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향리는 유교 가치를 수용했다.
- ② 향리 중에는 조정에 등용된 자도 있다.
- ③ 향리도 백성을 다스리는 계층의 하나이다.
- ④ 향리의 지위는 시대에 따라 점차로 높아졌다.
- ⑤ 향리 조직은 중앙 조직을 모방하여 만들어졌다.